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39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편집인 공보실장 최원호
 인쇄국 서울판인쇄주식회사

차 례

△조례..... 13559

- 제 465호 서울특별시립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 제 466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 제 467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중 개정
- 제 468호 서울특별시세 조례중 개정
- 제 469호 자동차 기당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
- 제 470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 제 471호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 조례중 개정

△규칙..... 13586

- 제 616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소 종업원 규칙
- 제 617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직제
- 제 618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 제 619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칙
- 제 620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

△사령..... 13603

△고시..... 13625

- 제 7 호 1967년도 종축검사 실시
- 제 8 호 사망지정지 해제

△공고..... 13626

- 제 21 호 승인시징 개설허가

서울특별시
史編纂委員會

(2) 조 제

- 제 22 호 환지변경처분 취소
- 제 23 호 세목공고
- 제 24 호 환지 예정지 지정
- 제 25 호 독극물에 관한 시험실시
- 제 26 호 시유건물(철조건부) 매각처분
- 제 27 호 시유재산 매각
- 제 28 호 주택 건설용 지분분양
- 제 29 호 전차일부 운전제통 임시휴지 및 변경실시
- 제 30 호 건물(철조건부)매각
- 제 31 호 택시 서교시 상 개설허가
- 제 32 호 분묘이장
- 제 33 호 토지 세목공고
- 제 34 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 제 35 호 환지처분 일련변경

△예 규..... 13664

- 제 141 호 경찰차량 통세관리 규정
- 제 142 호 전개처리업 허가사무 취급요령
- 제 143 호 양곡 가공공장 허가사무 취급요령중 개정
- 제 144 호 예산집행 제외절차

조 제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立婦女相談所 設置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17年 2月 1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5號

서울特別市立婦女相談所設置條例

第1條(目的) 婦女子에 對한 身上 生活相談과 家出 浮浪 또는 淪落한 女子 (以下要保護婦女子라 한다)의 善導를 爲하여 서울特別市에 婦女子相談所(以下相談所라 한다)를 둔다.

第2條(位置) 相談所는 서울特別市廳內에 둔다 다만 必要에 따라 重要關係의 各區區所에 相談室을 둘수 있다

第3條(職務) 相談所에서는 다음 各號의事項을 管掌한다

1. 婦女子에 對한 身上生活의 相談에 關한 事項
2. 要保護婦女子의 啓蒙指導에 關한 事項
3. 要保護婦女子의 職業指導에 關한 事項
4. 轉落의 危險性이 있는 婦女子의 善導措施에 關한 事項
5. 要保護婦女子의 社會環境等에 關한 諸問題의 研究와 改善에 關한 事項

第4條(職員의 配置) ① 相談所에 所長 幹事 및 必要한 職員은 둔다

② 所長은 婦女課長이 幹事는 婦女保護係長이 된다

③ 相談所 및 相談室에 配置된 職員의 定數는 市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5條(所長과 幹事の 職務) ① 所長은 市長의 命을받아 所務를 統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② 幹事は 所長을 補佐하고 所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6條(委託運營)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社會事業團體 또는 宗教團體인 法人에게 相談所를 委託運營하게 할수 있다

第7條(施行規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條例施行前에 既に 設置運營中인 相談所 또는 相談室은 이 條例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1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6號

서울特別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다음에 다음 第5條를 挿入하고

第5條 以下の 順次를 各條 낮춘다

第5條(占用料徵收) 占用料 徵收에 關하여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依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문교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서울특별시 敎育위원회위원 비용변상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3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敎育위원회 敎育장

◎서울특별시조례제467호

서울특별시敎育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敎育위원회위원 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일반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稅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17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8號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 (脫漏 또는 滯延된 徵收金의 處理) 脫漏義務不履行 詐欺 其他 不正
한 行爲로 滯延된 徵收金은 課稅한 年度의 稅率에 의하여 當該金額을 一
時에 賦課徵收한다

第14條 題目「自進申告納付의 期限」을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의 期限」으로 同條本文中 「自進申告納付」를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로 同條 第2號中 「所得稅法第16條」다음에 「第1項」을 挿入하고 同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號 및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所得稅法 第16條 第1項 第1號(不動產所得 乙種配當利子所得 零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

第1期 7月 1일부터 8月末日까지

第2期 翌年 1月 1일부터 2月末日까지

3. 所得稅法 第16條 第1項 第3號(其他 所得中 一別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는 所得이 發生한 날부터 2월 1日 以內

4. 所得稅法 第16條 第3項의 適用을 받는 事業所得의 發生한 날 廢業한 날 에는 廢業일까지의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를 該日의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第14條의 2 (自進申告納付에 對한 稅額控除) 法第7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自進申告納付를 하는 경우에는 自進申告納付相當附加稅額(以下 100%의 10에 相當하는 金額(以下 自進申告納付控除額이라 한다)을 控除한 後의 稅額(以下 自進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5條를 削除한다

第1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 (中間豫納附加稅의 徵收期限) 法第7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間豫納附加稅의 徵收期限은 다음 區分에 依하여 徵收한다

第1期 4月 1일부터 6月末日까지

第2期 9月 1일부터 12月末日까지

第17條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條 (徵收) 法第75條의 規定에 依한 所得稅는 各期分은 다음과 掲記한 바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1. 所得稅法 第31條 第1號(事業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

第1期分 當年 11月 11日부터 11月末日까지

第2期分 翌年 5月 11日 부터 5月末日까지

2. 所得稅法 第31條 第2款(不動産所得 乙種配當利子所得 또는 所得稅法第2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事業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

第1期分 當年 10月 11日부터 10月末日까지

第2期分 翌年 4月 11日부터 4月末日까지

3. 所得稅法 第31條 第5款(乙種勤勞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

第1期分 5月 11日부터 5月末日까지

第2期分 8月 11日부터 8月末日까지

第3期分 11月 11日부터 11月末日까지

第4期分 翌年 2月 11日부터 2月末日까지

4. 所得稅法第31條 第4款(其他 所得中 一時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는 納稅告知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

5. 所得稅法第21條 第5款 및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賦課하는 所得稅附加稅는 納稅告知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第21條中 「60日」을 「30日」로 한다

第22條中 「80日」을 「50日」로 한다

第2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 2 (臨時賦課) 法人稅法第28條 및 同法 第29條의 適用을 받는 法人稅에 對한 法人稅附加稅는 法第82條의 通報를 받아 納稅告知한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期限) 法第95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稅附加稅의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期限은 다음 區分에 依한다 다만 營業을 廢業한 境遇에는 廢業 1까지의 營業稅에 對한 營業稅附加稅를 漏滯없이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1. 法人 事業年度終了後 30日內(다만 事業年度가 6月以上에 걸쳐 있는 法人은 6月間을 事業年度로 본다)

2. 個人 第1期 7月 1일부터 20日內

第2期 翌年 1月 1일부터 20日內

第26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6條의 2 (自進申告納付에 對한 稅額控除) 法第9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個人이 自進申告納付하는 境遇에는 申告相當附加税(以下 그 100分の 10에 相當하는 金額(以下 自進申告納付控除額이라 한다)을 控除한 것은 稅額(以下 自進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27條를 削除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 (中間豫納附加税의 徵收期限) 法第9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間豫納附加税의 徵收期限은 다음 區分에 依한다

1. 法人 中間豫納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50日內

2. 個人 第1期 4月 1일부터 5月末日까지

第2期 10月 1일부터 11月末日까지

第29條(徵收) ①營業稅附加税의 納期는 法人에 있어서는 決定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個人에 있어서는 各期分을 다음에 依하여 徵收한다

第1期分 9月 11일부터 9月末日까지

第2期分 翌年3月 11일부터 3月末日까지

②營業稅法第19條 第2項 및 同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賦課하는 營業稅에 對한 營業稅附加税는 營業稅의 例에 依하여 納税告知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第31條 第1項中 「不動産 舟 車輛과 重機」를 「不動産, 車輛, 重機, 立木과 舟 (20噸未滿에 限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中 「申告가 없거나 申告價」를 「申告 또는 申告價額」으로 「船舶 舟 車輛과 重機」를 「船舶, 車輛, 重機, 立木과 舟」으로 同條第3項을 第6項으로 하고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3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鑛業權 및 漁業權에 있어서는 그 名目の 如何를 不問하고 이를 取得하기 爲하여 代價로서 支拂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한다

④法第105條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한 建物の 改築 및 船舶, 舟, 車輛과 重機의 種類變更의 境遇에는 그 建物の 改築 또는 船舶, 舟, 車輛과 重機의 種類變更으로 因하여 增加한 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다만 增加한 價額의 申告 또는 申告價額이 不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市長이 定하는 價額에 依한다

⑤建物を 増築한 境遇의 課稅標準은 그 建物の 増築에 所要되는 金額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前項 但款의 規定을 準用한다 同條第6項 第6號 및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判決 또는 公正證書에 依하여 取得價格이 立證되는 取得

7 法人의 取得으로 하고 同條第7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⑦前項第7號의 規定에 依한 法人의 取得에 있어서는 第35條의 規定에 依한 取得價格의 申告 또는 申告價格이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格이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區廳長이 決定한다

第3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1條의2 (附帶設備의 種類와 課稅範圍)

①令第70條의 4의 規定에 依한 建物中 造作其他附帶設備에 屬하는 部分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暖房用 汽罐과 이에 附隨되는 設備 및 煙突
2. 冷房用施設(小型機動式 設備除外)
3. 劇場 映畫館의 固定된 椅子 映寫施設 및 發電機
4. 動力에 依한 昇降施設
5. 上下水用 貯藏槽와 濾過槽 및 이의 附帶設備
6. 附屬된 金庫
7. 電氣 水道設備
8.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그 經費가 資本的 支出로 認定되는 것

②建物中 造作 其他 附帶設備의 課稅標準은 造作 其他 附帶設備에 所要되는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前條第4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其他物件等の 課稅標準額) ① 法第111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其他物件의 課稅標準과 同條第3項의 規定의 增加한 價額 同條第4項 및 前條第2項의 規定의 所要되는 金額은 다음에 依하여 每年2分期別로 調査된 時價에 依하여 市長이 定한다

1. 上半期分 1月 1日 現在의 時價

2. 下半期分 7月 1日 現在의 時價

② 1月 1日 또는 7月 1日 現在에 없었거나 時價를 定하지 아니한 其他物件 등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發生한 때의 時價에 依하여 市長이 定한다

第3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의 2 (取得當時의 現況賦課) ① 不動産(鐵業權과 漁業權은 除外한다) 舟車輛 또는 重機에 있어서는 公簿上の 記載 또는 登記事項에 不拘하고 當該物件을 事實上으로 取得한 때의 現況에 依하여 賦課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 土地의 賃貸價格이 決定되지 아니하였거나 土地의 異動으로 賃貸價格의 決定을 要하는 土地에 있어서는 登錄稅課稅標準額 規定의 例에 依하고 土地의 情況變更 등의 事由로 賃貸價格을 決定한 時價에 依한다 ③ 前條에는 法第187條의 2 第2項의 規定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35條 第1項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物에 있어서는 「構造 附帶設備의 種類 用途 및 面積 또는 體積」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3號를 第14號로 하고 第1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3 立木에 있어서는 「樹種樹齡과 材數 및 材積」으로 同條第4項中 「増築 또는 改築으로 因한」을 「増築改築 또는 遷作기나 其他 附帶設備으로 因한」으로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 船舶(舟가 船舶으로 된 것을 包含한다) 舟車輛과 庫船의 種類變更으로 因한 取得에 關한 申告書에는 當該施工者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와 姓名 또는 名稱을 明示하여 그 種類를 變更하기 爲한 船舶登記申請 計畫 및 施工費明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43條中 「遊興飲食하는 行爲」을 「遊興飲食과 宿泊을 하는 行爲」로 한다

第46條 第1項中「遊興飲食하는 行爲」를「遊興飲食과 宿泊의 行爲」로 한다

第47條 第3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法第139條 第1項에 掲記하는 場所가 臨時的인 것이거나 其他의 理由로 遊興飲食稅를 通脫한 嫌疑가 있다고 區廳長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別徵收義務者에게 臨時로 遊興飲食과 宿泊行爲人員 課稅標準 및 稅額 其他區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記載하여 申告함과 同時에 그 徵收金을 納入하게 할 수 있다

④區廳長은 前項의 境遇 그 뜻을 即時 特別 徵收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4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 2 (加算稅額)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다음에 依하여 加算한 金額(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稅額으로 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稅額과 同時에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한다

1. 申告納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稅額의 100分の 20에 相當하는 金額
2. 申告納入한 稅額이 更正稅額에 未達한 때에는 그 未達稅額의 100分の 10에 相當하는 金額

第49條中「30日」을「60日」로 한다

第50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1項의 經營者가 그 場所의 經營을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 休業事由와 그 期間을 定하여 休業前日까지 所轄保健所長을 經由하여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 (領收證의 交付手続) ①遊興飲食場所의 經營者는 遊興飲食 및 宿泊料金과 遊興飲食稅를 領收할 때마다 地方稅法施行規則의 定하는 書式으로서 所轄區廳의 檢印을 받은 領收證을 받드시 그 支拂者에게 交付하여야 하며 領收證의 副本은 1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②遊興飲食場所의 經營者가 法第141條의 規定에 依한 非課稅 該當遊興飲

食料 宿泊料金を 領收할 때에는 地方稅法施行規則의 附屬 書式으로 所轄 區廳長의 檢印을 받은 領收證을 받드시 그 支拂者에게 交付하여야 하며 그 領收證의 正本은 申告納入과 同時에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경우 到 有에서 그 副本의 保存은 前項의 例에 依한다

第5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3條 (營業의 停止와 許可의 取消要求等) 1 法第147條의2와 令第103條의2에 規定에 依한 營業의 停止나 許可의 取消處分 또는 處分要求基準의 回數計算은 3月을 1期中으로 한다

②營業의 停止處分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依한다

1. 法第147條의2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實은 1回 摘發하였을 때에는 3日의 營業停止
2. 前號의 事實은 2回 摘發하였을 때에는 10日의 營業停止
3. 第1號의 事實은 3回 摘發하거나 法第147條의2 第1項 第3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1回 發生하였을 때에는 20日의 營業停止

③第1項의 規定하는 期間中에 法第147條의2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4回以上 摘發되거나 同條同項第3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2回以上 發生한 때에는 市長 또는 區廳長은 營業許可의 取消을 決定한 取消處分을 要求하여야 한다

④法第147條의2 第1項 各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總合한 때에는 當該事實에 該當하는 前第2項의 規定의 營業停止日數를 各々 合算하여 該項의 停止處分 또는 處分要求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回數計算은 1回로 한다

第5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4條의2 (場所指定) 區廳長은 令第93條와 第94條에 依한 第2種과 第1種場所를 指定하여야 하며 令第92條에 揭記하는 第1種場所의 類似한 場所에 對하여 第1種場所로서 遊興飲食稅를 賦課하고자 할 때에는 該 第1種場所로 指定하여야 한다

第56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特別賦收義務者가 條例의 規定에 依한 申告納入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普通徵收方法에 依하여 徵

收한다

第69條中「法第161條」다음에 「와令第114條」를 挿入한다

第74條 第1號中「農地改革法 또는 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하여 土地의 分配 또는 賣却을 받은者」를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土地의 分配을 받은者 또는 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하여 土地를 賣却하거나 國, 道, 市, 郡 또는 市, 郡 組合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土地를 賣却한 境遇의 買受契約者」로 하고 同條第2號中「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하여 歸屬財産을 買受한者 또는 國, 道, 市, 郡 또는 市, 郡 組合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團體의 財産을 買受한者」를 「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하여 家屋을 賣却하거나 國, 道, 市, 郡 또는 市, 郡 組合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家屋을 買却한 境遇의 買受契約者」로 한다

第75條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財産稅의 課稅 標準이 되는 賃貸價格의 決定은 法第187條의2의 規定에 依한다

③區廳長은 法第187條의: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의 賃貸價格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이를 即時 土地臺帳과 財産稅 課稅臺帳에 登載하여야 한다

第85條 第2項中「該當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農地所有者와 耕作者가 連帶하여 納稅義務을 진다」를 「該當하는 者가 그 土地를 他人에게 耕作시키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耕作者가 農地稅의 納稅義務을 진다」로 하고 1 同條 第3項 및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한 耕作者가 當該農地稅를 納期內에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耕作者의 所在不明으로 當該農地稅를 徵收하기 困難한 境遇에는 그 農地의 所有者가 第2次納稅義務을 진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法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에 該當하는 者가 그 農地를 他人에게 耕作시키는 境遇에는 그 農地의 所在地 地目 地積 作物의 種類 및 耕作者의 住所 姓名 其他 課稅에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申告書를 事實發生日로부터 30日內에 所轄區廳

붙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91條 各號中「日當 100원」을「日當 180원」으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1966年 8月 3일부터 適用한다

②(適用例) 國稅附加稅의 適用은 1966年 1月 1일부터 當該稅의 例에 依하고 이 條例에 依하여 새로히 賦課하게 되는 것은 1966年 9月 1일부터 適用한다 다만 令第114條의 其他免許의 種類에 對한 免許稅는 1967年 1月 1일부터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條例의 其他物件의 時價(車輛 重機로서 1966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에 依하여 이미 定한 것은 除外하다)는 1966年 8月 3日 現在の 時價에 依한다

④(何前)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의 取消要求基準의 期間은 第53條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966年度에 限하여 1966年 12月 31日까지를 1期間으로 한다

서울特別市稅條例 現行·改正條文 對比表

第一章 總 則

現	行	改	正
第10條(脫漏 또는 通脫된 徵收金의 處理) 脫漏 또는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通脫된 徵收金		第10條(脫漏 또는 通脫된 徵收金의 處理) 脫漏 義務不實行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通脫된 徵收金	

第二章 國稅附加稅

第一節 所得附加稅

現	行	改	正
第14條(自進申告納付의 期限) 法第70條의 規定에 依하여 所得稅附加稅를 自進申告納付하는 期限은 市廳 區分에 依한다		第14條(自進申告納付의 申告納付의 期限) 法第70條의 規定에 依하여 所得稅附加稅를 自進申告納付하는 期限은 市廳 區分에 依한다	

1. 所得稅法第16條 第1號 (不動產所得乙種의 配當利子 所得 其項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 附加稅 第1期 7月 1일부터 60日內 第2期 翌年 1月 1일부터 60日內 2. 所得稅法第16條 第2號 (乙種勤勞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 附加稅 第1期 4月 1일부터 10日內 第2期 7月 1일부터 10日內 第3期 10月 1일부터 10日內 第4期 翌年 1月 1일부터 10日內 3. 新設 4. 新設 第14條의2 新設	1. 所得稅法第16條 第1項 第1號(..... 第1期 7月 1일부터 8月末日까지 第2期 翌年 1月 1일부터 2月末日까지 2. 所得稅法第16條 第1項 第2號(乙種勤勞所得)의..... 以下同 3. 所得稅法第16條 第1項 第3號(其他所得中一時所得)의 適用을 받은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는 所得이 生じた날로부터 20日以內 4. 所得稅法第16條 第3項의 適用을 받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가 廢業한 때에는 廢業日까지의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를 지체없이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第14條의2 (自進申告納付에 對한 稅額控除)는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進申告納付를 하는 경우에는 自進申告納付 相當稅額에서 100分の10에 相當하는 金額(以下自進申告納付控除額이라함)을 控除한 것은 稅額(以下自進申告納付稅額이라함)으로 한다
--	--

第15條 第16條(中間課納附加稅의 徵收期限) 法第7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 課納附加稅의 徵收期限은 다음의 區 分에 依한다 第1期 4月 1일부터 90日內 第2期 10月 1일부터 90日內 第17條(徵收) 所得稅 附加稅는 各期 分을 다음에 揭記하는 바에 의하여 이론 徵收한다 1. 所得稅法第31條1號(不動產所得乙 種의 配當利子所得事業所得)의 通 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 附加稅 第1期分 10月 1일부터 10月 20日까지 第2期分 翌年 4月 1일부터 4月 20日 까지 2. 所得稅法第31條2號(乙種勤勞所 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 第1期分 5月 1일부터 5月 20日까지	削除 第16條(中間課納附加稅의 徵收期限)法 第74條 第1項의 規定…………… 第1期 4月 1일부터 6月 末日까지 第2期 9月 1일부터 12月 末日까지 第17條(徵收) 法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附加稅는…………… 1. 所得稅法 第31條 第1號(事業所得)의 適用을…………… 第1期分 11月 1일부터 11月 末日까지 第2期分 翌年 5月 1일부터 5月 末日까지 2. 所得稅法第31條 第2號(不動產所得 乙種配當利子所得)는 所得稅法第 2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 業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 한 所得稅附加稅 第1期分 10月 1일부터 10月 末日까지 第2期分 翌年 4月 1일부터 4月 末日 까지 3. 所得稅法第31條 第3號(乙種勤勞所 得)의…………… 第1期分 5月 1일부터 5月 末日까지
--	--

第2期分 8月 1일부터 8月 20일까지 第3期分 11月 1일부터 11月 20일까지 第4期分 翌年 2月 1일부터 2月 20일까지	第2期分 8月 11일부터 8月末日까지 第3期分 11月 11일부터 11月末日까지 第4期分 翌年 2月 11일부터 2月末日까지
	4. 所得稅法 第31條 第4號(其他所得中一時所得)의 適用을 받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는 納稅告知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5. 所得稅法 第31條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하는 所得稅에 對한 所得稅附加稅는 納稅告知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第二節 法人稅附加稅	第二節 法人稅附加稅
第21條 (豫納期限) 法第8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附加稅의 豫納期限은 그 豫納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60日內로 한다	第21條 (豫納期限) 法…………… 날로부터 30日內로 한다
第22條 (豫納附加稅의 徵收期限) 法第8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豫納附加稅額의 徵收期限은 當該 豫納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80日內로 한다	第22條 (豫納附加稅의 徵收期限) 法…… 한 날로부터 50日內로 한다
第22條의 2 新設	第22條의 2 (隨時賦課) 法人稅法 第28條 第29條의 適用을 받는 法人稅에 對한 法人稅附加稅는 法第82條의 通報를 받아 納稅告知한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第3節 營業稅附加稅	第3節 營業稅附加稅
第26條 (自進申告納付의 期限) 法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稅附加稅의	第26條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期限) 法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稅附加

自進申告納付期限은 다음 區分에 의한다 但 營業을 廢業한 境遇에는 之세없이 自進申告納付하여야 한다

第1期 7月 1일부터 20日內

第2期 翌年 1月 1일부터 20日內

第26條의2 所設

第27條 (中間豫納의 自進納付期限)

第28條 (中間豫納附加稅의 徵收期限)

法第9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中間豫納附加稅額의 徵收期限은 다음 區分에 依한다

1. 法人 中間豫納期일이 經過한 日로부터 60日內

2. 個人 第1期 4月 1일부터 60日內

第2期 10月 1일부터 60日內

第29條 (徵收) ①營業稅附加稅의 納

稅의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 期限은 다음 區分에 依한다 但 營業을 廢業한 경우에는 廢業日까지의 營業稅에 對한 營業稅附加稅을 之세없이 自進申告納付 또는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1. 法人 事業年度 終了後 30日內 但 事業年度가 6月1日에서 終了하는 法人은 6月間을 一事業年度로 한다

2. 個人

第26條의2 (自進申告納付에 對한 納稅額) 第96條 第2項의 規定을 依한 個人의 自進申告納付는 全額申告相當 附加稅額에서 其100분의10을 扣除하는 金額(以下自進申告納付相當額이라 한다)을 控除한 金額(以下自進申告納付의 納稅額으로 한다)

創 除

第28條 (中間豫納附加稅의 徵收期限)

法第99條第1項.....

1. 法人 中間豫納期일이 經過한 日로부터 50日內

2. 個人 第1期 4月 1일부터 5月 1日 까지

第2期 10月 1일부터 11月 1日 까지

第29條 (徵收) ①.....

期는 法人에 있어서는 決定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個人에 있어서는 各期分을 다음에 의하여 徵收한다

第1期 9月 10일부터 9月末日까지

第2期 翌年 3月10일부터 3月末日까지

②營業稅法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附加稅는 課免標準決定 即時 同法同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附加稅는 決定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하여야 한다

第1期 9月 11일부터 9月末日까지

第2期 翌年 3月11일부터 3月末日까지

②營業稅法第19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하는 營業稅에 對한 營業稅附加稅는 營業稅의 例에 의하여 納稅告知의 날로부터 15日內에 徵收한다

第3章 獨 立 稅

第1節 取 得 稅

現	行	改	正
第31條 (納稅義務者等) ① 取得稅는 不動産, 舟, 車輛과 重機 取得에 對하여 ② 前項에 規定한……다만 申告가 없거나 申告價格의 表示가 없거나…… 船舶, 舟, 車輛과 重機에 있어서는 ③ 新 設 ④ 改 正		第31條 (納稅義務者等) ① 取得稅는 不動産, 車輛, 重機 立木과 舟(20噸 未満에 限한다)의 取得에 對하여 ② 前項에 規定한……다만 申告 또는 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船舶, 車輛, 重機 立木과 舟에 있어서는 ③ 礦業權 및 漁業權에 있어서는 그 名目的 如何에 不問하고 이를 取得하기 爲하여 代價로서 支拂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한다 削 除 ④ 法第105條 第3項 및 同條第5項의 規定에 依한 建物の 改築 및 船舶, 舟, 車輛과 重機의 種類變更의 경우에는 不	

⑤新 設

⑦다음에 掲記하는 取得에 對하여는 前項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事實上의 取得價額 또는 年賦金額에 의한다

1~5 省略

⑦新 設

第31條의2 新設

그 建物の 改築 또는 船舶, 舟, 車輛과 重機의 種類變更으로 因하여 增加한 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다만 增加한 價額의 申告 또는 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不當하다의 認定되는 경우에는 市長이 決定한 價額에 依한다

⑧建物を 増築한 場合의 課稅標準은 그 建築의 増築에 必要되는 全額으로 한다 이 場合에 있어서는 前項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음 6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改正을

⑨다음에 掲記하는 取得에 對하여는 第2項 但書의 規定을 不拘하고 事實上의 取得價額 또는 年賦金額에 의한다

1~5 省略

6. 判決 또는 公正評議에 依하여 取得價額이 立證되는 取得

7. 法人의 取得

前項 第7號 規定의 法人의 取得에 있어서는 第35條의 規定에 依한 取得價額의 申告 또는 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不當하다의 認定된 때에는 區廳長이 決定한다

第31條의2 (附屬設施의 種類과 課稅範圍等) ①令第70條 14의 規定에 依한 建物中 造作 其他 附屬設施에 屬하는 部分이라 한은 다음 名號의 1에 該當

第32條 改正

하는 것을 말한다

1. 暖房用汽爐과 이에 附隨되는 設備 및 煙突
2. 冷房用施設(小型移動式施設除外)
3. 劇場, 映畫館의 固定된 椅子와 映寫施設 및 發電機
4. 動力에 依한 昇降施設
5. 上, 下水用 貯藏槽와 濾過槽 및 이의 附帶設備
6. 附着된 金庫
7. 電氣 水道設備
8.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그 經費가 資本的 支出로 認定되는 것

②建物中 造作 其他 附帶設備의 課稅標準은 并作 其他 附帶設備에 所要되는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前條 第4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 (其他 物件等의 課稅標準額)①
法第111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其他 物件의 課稅標準과 同條第3項의 規定의 增加한 價額 同條第4項 및 前條 第2項의 規定에 所要되는 金額은 다음에 依하여 每年 2分期別로 調査된 時價에 依하여 市長이 定한다

1. 上半期分 1月 1日 現在의 時價
2. 下半期分 7月 1日 現在의 時價

②1月 1日 또는 7月 1日 現在에 없었거나 時價를 定하지 아니하였던 其他

第32條의2 新設

物作等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發生한
때의 時價에 依하여 市長이 定한다

第32條의2 (取得當時의 現況賦課) ①
不動産(租業權과 漁業權은 除外한다)
舟, 車輛 또는 設備이 있어지는 公團
上의 房屋 또는 貯藏庫等에 不拘하고
當該物作을 事實上으로 取得한 이의
現況에 依하여 賦課한다

當前項의 경우에 土地의 賃貸價格이
決定되지 아니하였거나 土地의 賃金
으로 賃貸價格의 決定을 要하는 土地
에 있어서는 登錄地價稅標準額 決定
의 例에 依하고 土地의 情況變化 等
의 事由로 賃貸價格을 새로히 定하여
야 할 때에는 法第137條의2 第2項의
規定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35條 (申告義務) ①省略

1~4 省略

5. 建物에 있어서는 構造 種類 用途
및 面積

6~12 省略

13을 14로 하고 13을 新設

②~③ 省略

④建物の 新築, 増築 또는 改築으로
인한.....

⑤新設

第35條 (申告義務) ①省略

1~4 省略

5. 建物에 있어서는 構造 附屬設備의
種類 用途 및 面積 또는 體積

6~12 省略

13. 立木에 있어서는 樹種 樹齡의 數
및 材積

14. 其他 參考事項

②~③ 省略

④建物の 新築, 増築 改築 또는 造作
이나 其他 附屬設備으로 因한.....

⑤船舶(舟가 船舶으로 認 定을 受한)
舟 車輛과 設備의 現狀變化으로 因한

	取得에 관한申告書에는 當該施工者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와 姓名 또는 名稱을 明示하여 그 種類를 變更하기 爲한 都給與約書 設計書 및 施工費明細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第3節 遊興飲食稅 第43條 (納稅義務者) 遊興飲食稅는... 遊興飲食과 宿泊을 하는 行爲에 대하여 第46條 (特別徵收義務者) (D) 遊興飲食의 行爲를 할 때마다..... 第47條 (申告納入) ①~② 省略 ③新設 ④新設 第48條의2 新設 取得에 관한申告書에는 當該施工者의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와 姓名 또는 名稱을 明示하여 그 種類를 變更하기 爲한 都給與約書 設計書 및 施工費明細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第3節 遊興飲食稅 第43條 (納稅義務者) 遊興飲食稅는... 遊興飲食과 宿泊을 하는 行爲에 대하여 第47條 (特別徵收義務者) ①... 遊興飲食과 宿泊의 行爲를 할 때마다 第47條 (申告納入) ①~②省略 ③法第139條 第1項에 掲記하는 場所가 臨時的인 것이거나 其他의 理由로 遊興飲食稅를 通脫할 우려가 있다고 區廳長이 認定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別徵收義務者에게 隨時로 遊興飲食과 宿泊行爲人員, 課稅標準 및 稅額 其他 區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記載하여 申告한과 同時에 二 納入金額을 納入하게 할 수 있다 ④區廳長은 前項의 경우 그 뜻을 即時 特別徵收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48條의2 (加算稅額)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 에는 다음에 依하여 加算한 金額(以
--	---

第49條 (納稅擔保)……開始한 날로부터 30日以内に…… 第50條 (開業 및 休業申告) ①~② 省略 ③第1項의 經營者가 其場所에 經營을 1個月以上 休業한 時에 是는 二 時期와 期間을 定하여 所轄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2條 (領受證의 交付) 遊興飲食場所의 經營者는 遊興飲食料金과 遊興飲食稅를 徵收한 때마다 所轄區廳長의 檢印을 받은 領受證을 그 支拂者에게 반드시 交付하여야 한다 ②新設	下 加算稅額)을 稅額으로 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 稅額과 同時에 特別徵收 義務者로 부터 徵收한다 1. 申告納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稅額의 100分の 20에 相當하는 全額 2. 申告納入한 稅額이 更正稅額에 未達한 때에는 그 未達稅額의 100分の 10에 相當하는 全額 第49條 (納稅擔保)……開始한 날로부터 60日以内に…… 第50條 (開業 및 休業申告) ①~② 省略 ③第1項의 經營者가 二 場所의 經營을 休業한 時에 是는 休業事由와 二 期間을 定하여 休業前日까지 所轄 保健所長을經由하여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2條 (領受證의 交付及 存) 遊興飲食場所의 經營者는 遊興飲食 및 泊料金과 遊興飲食稅를 徵收한 때마다 地方稅法施行規則의 規定하는 格式으로 所轄區廳長의 檢印을 받은 領收證을 반드시 그 支拂者에게 交付하여야 하며 領收證의 原本은 2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②遊興飲食場所의 經營者가 去第21條 規定의 非課稅 或은 遊興飲食料 泊料金을 徵收한 때에는 地方稅法 施
---	--

第53條 (義務不履行等) 133條에 의한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境遇에
는 市長 또는 區廳長은 營業停止等
圖上 必要한 處分을 알 수 있다

②新設

③新設

行規則의 定하는 書式으로서 所轄區廳
長의 檢印을 받은 領收證을 받드시 그
交付者에게 交付하여야 하며 그 領收證
의 正本은 申告納入과 同時에 區廳長
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그 副本의 保存은 前項의 例에 依한다
第53條 (營業의 停止와 許可의 取消要
求等) ①法第147條의 2와 令第103條의
2의 規定에 依한 營業의 停止와 許可
의 取消處分 또는 處分要求 基準의 算
數計算은 3月을 1期間으로 한다

②營業의 停止處分은 다음 各號의 區
分에 依한다

1. 法第147條의 2第1項第1號 또는 第2
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實을 1回
摘發하였을 때에는 3日의 營業停止
2. 前號의 事實을 2回 摘發하였을 때
에는 10日의 營業停止
3. 第1號의 事實을 3回 摘發하거나 法
第147條의 2 第1項 第3號에 該當하
는 事實이 1回 發生하였을 때에는
20日의 營業停止

③第1項에 規定하는 期間中에 法第14
7條의 2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
當하는 事實이 4回 以上 摘發되거나
同條同項第3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2
回以上 發生한 때에는 市長 또는 區
廳長은 營業許可의 取消을 하거나 取
消處分을 要求하여야 한다

④新設

第54條의2 新設

第4節 屠宰稅

第56條 (徵收方法) 屠宰稅는 特別徵收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但舊新設

第6節 免許稅

第69條 (納稅義務者) 免許稅는 法第161條에서 規定하는.....

第7節 財産稅

第74條 (納稅義務者等).....

1. 土地, 納稅開始日 現在로 土地課稅台帳에 登錄된 所有者와 農地改革法 또는 歸屬財産處理法에 의하여 土地의 分配 또는 賣却을 받은 자(地上權).....

④法第147條의2 第151 各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該當한 때에는 當該 事實에 該當하는 前第3項 規定의 營業停止 日數를 各各 合算하여 營業의 停止處分 또는 處分要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日數 計算은 1회로 한다

第54條의2 (場所指定) 賦課長은 各第93條와 第94條에 依한 第2種과 第3種 場所를 指定하여야 하며 各第92條에 揭記하는 第1種 場所와 類似的 場所에 對하여 第1種 場所로서 證券飲食稅를 賦課하고자 할 때에는 各第1種 場所도 指定하여야 한다

第4節 屠宰稅

第56條 (徵收方法) 屠宰稅는 特別徵收方法에 依하여 徵收한다

但 特別徵收義務者가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한 申告納入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普通徵收方法에 依하여 徵收한다

第6節 免許稅

第69條 (納稅義務者) 免許稅는 法第161條와 各第114條에서 規定하는.....

第7節 財産稅

第74條 (納稅義務者等).....

1. 土地, 納稅開始日 現在로 土地課稅台帳에 登錄된 所有者와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土地의 分配을 받은 자 또는 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하여 土地를 賣却하거나 讓, 贈, 遺, 贈,

2. 家屋……歸屬財産處理法에 의하여 歸屬財産을 買受한 자 또는 國, 道, 市, 郡, 市郡組合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團體의 財産을 買受한 者……

第75條 (課稅對象土地) ① 地籍公簿上의 ……

② 舊 新設

③ 舊 新設

第8節 農地稅

第85條 (納稅義務者等) ① 省略

② 前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農地所有者와 耕作者가 連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但……

③ 新設

市郡組合 其他 大統領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土地를 賣却한 境遇의 買受契約者(地上權……)……

2. 家屋……歸屬財産處理法에 의하여 家屋를 賣却하거나 國, 道, 市, 郡, 市郡組合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家屋를 賣却한 경우의 買受契約者……

第75條 (課稅對象土地等) ① 地籍公簿上의 ……

②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財産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買賃價格의 決定은 法第187條의 2의 規定에 依한다

③ 區廳長은 法第187條의 2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의 買賃價格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이를 即時土地台帳과 財産稅原稅台帳에 登載하여야 한다

第8節 農地稅

第85條 (納稅義務者等) ① 省略

② 前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그 土地를 他人에게 耕作시키는 경우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耕作者가 農地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但……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한 耕作者가 當該 農地稅를 納期內에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耕作者의 所在不明으로 當該 農地稅를 徵收하기 困難할 경우에는 그 農地의 所有者가 第2次 納稅義務者가 된다

④新設

第91條(委員의 手當과 旅費)

1. 農地調査委員會委員
日當 100원 旅費 100원
2. 農地調査委員會內委員
日當 100원 旅費 150원

勝算 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該條 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에 該當하는 者가 그 農地를 他人에게 耕作시키는 경우에는 그 農地의 所有地, 地目 租價과 作物의 種類 및 耕作者의 住所姓名 其他 課稅에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申告書를 事實 發生日로부터 30日 內에 所轄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91條(委員의 手當과 旅費)

1. 左同
日當 180원 旅費 130원
2. 左同
日當 130원 旅費 150원

附 則(1966. . .)

①(施行日) 이 條例는 1966年 8月 3日 부터 適用한다

②(適用例) 國稅附加稅의 適用은 1966年 1月 1日부터 當該 國稅의 例에 依하고 이 條例에 依하여 計算된 賦課額은 1966年 9月 1日부터 適用한다 단 令第114條의 其他 免許의 種類에 關한 免許稅는 1967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條例의 其他物件의 時價(車輛, 重機等) 1966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에 依하여 이미 定한것은 除外한다)는 1966年 8月 3日 現在의 時價에 依한다

④(同前)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의
停止 또는 許可의 取消基準의 期間은 第
53條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966年
12月 31일까지를 1期間으로 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自動車抵當權의 登錄에 關한 手數料徵收條
例廢止에 關한 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⁴³ 2月 2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69條

自動車抵當權의 登錄에 關한 手數料徵收條例廢止에 關한 條例
1962年 9月 18日 宇 서울特別市條例第250號 自動車抵當權의 登錄에 關한 手
數料 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手數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
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27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70號

서울特別市 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手數料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國際婚姻申告證明 1件 700원

附 則

이 條例는 西紀 1967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公益典當舖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
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28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71條

서울特別市公益典當館條例中改正條例

서울特別市 公益典當館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中 「6,0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 貸出金の 利率은 月 3分으로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利率의 計算은 月로하되 月을 超過하는 殘餘의 日數나 全體의 日數가 16日 以上인 때에는 1月로 16月未滿인 때에는 半月로 본다

附 則

이 條例는 196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규 칙

서울特別市 自動車運輸事業所 從業員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3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16號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所從業員規則

第1條(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所의 從業하는 從業員 以下從業員이라 한다)에 適用한 服務 및 報酬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範圍)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所, 以下 事業所라 한다)에 從事하는 者中 別表1에 規定된 從業員에 對하여 適用한다

第3條(從業員의 定員 및 配置) 1 從業員의 所需別定員은 如하 定한다

② 事業所長은 個別業務量을 參照한 細部基準을 定하여 從業員을 配置하여야 한다

第4條(任免) 從業員의 任免은 서울特別市長이 行한다 다만 事業所長에게

任免權을委任한 수 있다

第5條(缺格事由) ①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從業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財産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6. 在戰中에 不正行爲로 因하여 解免된 者로서 滿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6條(任用) ①從業員에 任命될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適合한 者라야 한다

1. 該當業務를 勘當할 수 있는 視聽力 및 辨色力을 갖은 者
 2. 該當業務에 從事한 學力, 能力 및 一定한 資格을 具有한 者
- ②任命權者는 前項에 規定한 職務遂行에 必要한 技能을 檢定하기 爲하여 鑑衡을 科한 수 있다

第7條(具備書類) 從業員을 採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提出하게 한다

- | | |
|---------------------------------------|----|
| 1. 履歷書(證明寫眞 2枚添付) | 2通 |
| 2. 身元證明書(市, 邑, 面長發行) | 1通 |
| 3. 健康診斷書 | 1通 |
| 4. 學力證明書 | 1通 |
| 5. 身元保證書 | 1通 |
| 6. 兵役畢證明書 | 1通 |
| 7. 一定한 資格을 必得로 하는 職種에는 그 資格을 認證하는 證明書 | 1通 |

第8條(賠償責任) 從業員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所屬機關의 物品을 毀損하였거나 消失하였을 때에는 그 賠償의 責任이 있다

第9條(解雇) 從業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解雇시킬 수 있다

1. 機構의 改組 또는 職制 및 定員의 變更이 있을 경우
2. 期限附 採用期間이 滿了되었을 때
3. 職務에 怠慢할 때
4. 素行이 不良할 때
5.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할 때
6.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었을 때
7. 其他 이 規則에 違反하였을 때

第10條(服務) ①從業員의 服務에 關하여는 地方公務員法第6章 服務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特殊勤勞者에 對한 服務要領은 따로 定할 수 있다

第11條(報酬) ①從業員의 報酬는 日給으로서 支給한다

②日給從業員의 報酬는 勤務日數에 依하여 支給한다 다만 勤務日數이 繼續되는 公休日과 非當日은 勤務日數로 본다

③從業員의 報酬는 發令當日부터 計算支給한다

④職種別 日給表는 別表(2)와 같다

⑤從業員의 報酬는 前月 15日부터 當月 15日까지의 分을 當月 25日에 支給하고 12월에 있어서는 2月 16日부터 末日까지의 分을 그 末日에 1월에 있어서는 2月 1日부터 15日까지의 分을 2月 25日에 支給한다

第12條(手當) ①從業員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內에서 다음과 手當을 支給할 수 있으며 그 支給額의 適用區分은 別表(3)과 같다

1. 厚生手當
2. 時間外 勤務手當
3. 運轉手當
4. 月次手當

②手當의 支給期間과 計算方法은 前條第5項의 規定에 依한다

第13條(被服貸與) ①從業員으로서 業務上 必要한 者에 對하여는 被服을 貸與한다

②被服을 貸與받는 者는 勤務時間中 반드시 着用하여야 하며 不潔已한 事

(32) 규 칙

由로 因하여 着用지 못할 때에는 所屬長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貸與받은 被服을 紛失 또는 毀損하여 着用不能일 때에는 自費로서 調製 着用하여야 한다

④被服을 貸與받은 者가 被服의 使用期間中 退職할 때에는 還納금이 返納 하여야 한다

第14條(被服貸與基準) 被服貸與對象者 및 貸與被服의 種類와 數量은 別表 (4)와 같다 다만 豫算의 決定範圍內에서 貸與數量을 増減할 수 없다

第15條(服制) 貸與服의 服制에 關하여는 따로 定한다

第16條(公傷) 이 規則에서 公傷이라 함은 業務遂行中 本人의 不可抗力으로 因한 負傷 또는 罹病을 말한다

第17條(治療機關) ①公傷의 治療는 서울特別市立病院에서 하여야 한다

②負傷의 性質로 보아 特別한治療를 要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他醫療機關에서 治療를 받을수있으며 이는 반드시 所屬長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8條(公傷者處理) 公傷者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所屬長은 應急治療後 診斷書 및 確認證을 醫師로부터 받아야 하며 治療費는 請求에 依하여 支出한다

第19條(公傷治療의 區分) 公傷治療의 區分은 別表(5)와 같다

第20條(公傷中の 報酬) 公傷으로 休務中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療養中 公傷前 平均賃金을 支給한다

第21條(治療費負擔) ①公傷者에 對하여는 그 治療費一切를 所屬機關에서 支給한다

②前項의 治療費는 1月마다 그 推算額의 8割以內에서 先拂할 수 있다

第22條(敎育) ①從業員에 對하여 必要에 따라 一定期間 敎育을 行한다

②敎育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23條(賞罰) ①從業員의 賞罰은 任免權者가 이를 專行한다

第24條(褒賞) 從業員이 다음 各號의 1이 該當할 때는 이를 褒賞할 수 있다

1. 水災 火災 其他非常事態에 際하여 適宜한 措置로서 이를 未然에 防止 하거나 顯著한 功績이 있을 때

2. 職務에 勤勉하여 他에 模範이 될 때

附 則

이 規則은 196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別表(1)

從 業 員 職 種 表

職 種				
自 動 車 運 轉 員	自 動 車 整 備 士	自 動 車 整 備 員	指 導 員	配 車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警 車 掌 理 員

別表(2)

職 種 別 日 給 表

職 種	日 給 額
自 動 車 運 轉 員	365원
自 動 車 整 備 士	280
自 動 車 整 備 員	146
指 導 員	130
配 車 員	143
警 車 掌 理 員	130
警 車 掌 理 員	100
警 車 掌 理 員	73
警 車 掌 理 員	90

(34) 附 表

別表(3)

陸 手 當 表

手 當 名	區 分	支 給 額 正 率	備 考
厚 生 手 當	月	日當×15%×30日	缺勤日이 있는 境遇에 (日當×15%×欠缺日數)該當額을 減한다
時間外勤務手當	月	休日 및 超過勤務時 時當 日當+(日當×15%)×30日	
		191	
運 轉 手 當	月	300	
月 次 手 當	月	自動車運轉員	790
		自動車整備士	498
		自動車整備員	317
		自動車指導員	282
		自動車配車員	302
		自動車警備員	282
		自動車車掌	220
		整備補助員	159
		車輛整理員	250

別表(4)

被 服 貸 與 表

職 種 別	夏 服	冬 服	作業服	制 帽	作業帽	備 考
自動車運轉員	1/1	1/2		1/3		
整備士			2/1		1/1	
整備員			2/1		1/1	
車 掌	1/1	1/2		1/3		

別表(5)

公 傷 治 療 區 分

區 分	概 要
入 院 治 療	入院을 要하는 治療
休 務	休務를 要하는 通院 또는 休養治療
通 院	勤務時間中 通院治療
激 務 禁 止	激務作業을 禁하는 治療

서울특별시 토지구획경리사업소 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서울특별시규칙제617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경리사업소 직제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에서 집행하는 토지구획경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토지구획경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①사업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구 역
동부토지구획경리사업소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지구
서부토지구획경리사업소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지구
남부토지구획경리사업소	영등포구지구

②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도목거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4조(공무원) ①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지방재정주사

(3 6) 규 칙

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기사
지방재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토목기사보
지방재정서기
지방행정서기
지방토목기원
지방재정서기보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토목기원보
기능직공무원
고용원

②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분장사무) ①사업소내 서무계, 환지제1계, 환지제2계, 공사제1계와 공사제2계를 둔다

②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환지제1계장, 환지제2계장, 공사제1계장과 공사제2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③사업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환지제1계와 환지제2계의 담당업무는 동일하되 지구별로 분장한다 공사제1계와 공사제2계도 이와같다

1. 서무계

- 가. 소비 업무의 종합조정
- 나. 문서판인 및 기밀에 관한 사항
- 다. 청중단속 및 당직에 관한 사항
- 라.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마. 도서 및 비품보관
- 바. 민원의 안내 및 처리

사.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아.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환지제1제와 환지제2제

가. 환지계획 및 이에 필요한 측량

나. 환지에경지 지정측량 및 분할측량

다. 가각점설치 측량

라. 환지확정 측량

3. 공사제1제와 공사제2제

가. 공사실제 측량 및 시공감독

나. 지구내의 토지관리

다. 공장을 및 지상물의 보상, 철거를 위한 대상조사

제6조(지구의 지점) 전조 제3항에 의한 각계별본장지구의 지점은 이를 소장이 행한다

제7조(직무대행)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65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476호 서울특별시 도지구획정리 사업소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15日

서울特別市長 김 현 옥

◎서울特別市規則第618號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職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第2項「審査分析擔當官」다음에「綜合記錄擔當官」를 追加하고 同第1號「企劃調整擔當官」分掌事務中 「마. 狀況室管理」를 削除하고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綜合記錄擔當官

- 가. 狀況板記錄整理
- 나. 市政資料作成 및 現況說明
- 다. 縮小狀況板(攜帶用) 製作 및 維持保全
- 라. 새서울企劃室管理

第12條 第2項 第1號「稅政係」分掌事務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稅政係

- 가. 稅政運營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 나. 稅政運營에 關한 細部計劃의 樹立과 執行 및 執行實績에 關한 審査와 綜合調整 및 統制
- 다. 地方稅制와 地方稅에 關한 法律 命令 規則의 研究 및 改正建議
- 라. 地方稅法運營에 關한 照覆의 審査 및 이에 關한 文書의 保存, 保管
- 마. 市稅에 關한 條例, 規則의 制定 또는 改正要求와 例規의 整備
- 바. 地方稅에 關한 審査請求와 訴願 請願等 民願事務處理의 審査
- 사. 市稅歲入豫算과 財支費의 調整配分
- 아. 區稅務行政의 全般內인 指導와 監督
- 자. 市稅增收推進委員會運營
- 차. 稅務從事公務員의 庸記票 發給 및 回收
- 카.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第12條 第2項 第2號「直稅係」分掌事務中「마」및「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가號稅目에 對한 疑義 照覆과 再調査 및 審査請求 訴願, 請願等 民願의 處理
- 바. 가號稅目에 對한 訟務處理

第12條 第2項 第3號「間稅係」分掌事務中「다」및「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가號稅目에 對한 稅源調査와 査察 및 遊興飲食場所의 經營實態分析에 關한 事項
- 마. 가號稅目에 對한 疑義 照覆과 再調査 및 審査請求와 訴願 請願等 民願의 處理

第12條 第2項 第4號「徵收係」分掌事務中「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市稅滯納處分에 對한 再調査 및 査査請求와 民願 또는 訴訟에 關한 事務處理

第15條 第2項 第1號「庶務係」分掌事務中「다」 및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土地區劃整理地區內 支障物의 移轉 및 補償

마.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에 隨伴한 訴訟 訴願의 處理

第15條 第2項 第2號「整理係」分掌事務中「가」「나」「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土地區劃整理地區內 洞界 洞名の 改正要求 및 地番整理

나. 換地 및 登記關託

다. 土地區劃整理事業 分擔金의 賦課

第15條 第2項 第3號「處分係」分掌事務中「가」「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移賣地處分

나. 其他 土地區劃整理地區內 用地에 關한 事項

第15條 第2項 第4號「收納係」分掌事務中「가」「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土地區劃整理費特別會計 歲入金收納

나. 土地區劃整理事業分擔金徵收

第1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條(區劃整理課) ① 區劃整理課에 計劃係, 換地係와 夢地係를 두고 係長은 土木技佐 또는 地方土木技佐로 補한다

② 區劃整理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計劃係

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綜合計劃

나. 土地區劃整理事業의 基本調査 測量, 設計

다. 事業執行計劃樹立 및 認可에 關한 事項

라. 土地所有者 및 工事施行事業의 助長과 指導監督

마.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換地係

가. 換地計劃樹立

- 나. 換地豫定地指定
- 다. 確定測量 및 街角設置
- 라. 從前土地分割 및 換地豫定地分割
- 마. 法院鑑定測量

3. 整地係

- 가. 土地區劃整理事業 工事設計審査 및 指導監督
- 나. 工事執行計劃樹立

第18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 第4號를 削除한다

- ①建築課에 建築行政係 建築第1係와 建築第2係를 두고 建築行政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建築第1係長과 建築第2係長은 地方建築技佐로 補한다

第18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의 2 (住宅課) ①住宅課에 住宅係 住宅管理係 宅地造成係, 住宅建設係와 商街住宅係를 두고 住宅係長 住宅管理係長과 商街住宅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宅地造成係長은 土木技佐 또는 地方土木技佐로, 住宅建設係長은 地方建築技佐로 補한다

- ②住宅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各號와 같다

1. 住宅係

- 가. 市營住宅建設의 綜合計劃
- 나. 宅地造成地區內 支障物의 移轉 및 補償
- 다. 住宅建設에 關한 諸般統計 및 資料의 蒐集과 調査
- 라. 住宅建設資材의 需給 및 住宅分讓
- 마.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住宅管理係

- 가. 住宅建設資金의 起債과 貸出 및 償還
- 나. 市營住宅의 分賃金測定 및 徵收
- 다. 市營住宅의 維持管理
- 라. 宅地造成事業分擔金의 賦課 및 徵收
- 마. 宅地造成費特別會計 歲入金收納

바. 各種徵收金 稽納處分

3. 宅地造成係

가. 市營住宅建設殘餘地의 管理

나. 宅地造成에 關한 事項

다. 宅地確定處分과 登記屬託

라. 其他 宅地造成地區內 用地에 關한 事項

마. 宅地造成地區內 洞界, 洞名과 地番의 整理要求

4. 住宅建設係

가. 市營住宅의 建築 및 附帶施設에 關한 設計와 施工監督

나. 住宅建築技術 改良向上의 研究

5. 商街住宅係

가. 商街 아파트 建立候補地 策定

나. 商街 아파트 建立計劃樹立

다. 商街 아파트 建物配置 및 基本設計

라. 商街 아파트 建立民間業者의 選定 및 契約條件에 關한 事項

마. 住宅店鋪 및 아파트 入住金決定

바. 商街 아파트 建立釐定地內 財産協議

사. 商街 아파트 建設에 關한 施工監督

第2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의2 (運輸事業課) ①運輸事業課에 管理係, 財務係와 施設係를 設치
管理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지방경찰사무관으로 財務係長은 地方行政
事務官으로 施設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機械技佐 또는 地方機械技佐로 補
한다

②運輸事業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管理係

가. 所管事業所의 指導監督

나. 從業員의 厚生福利와 勞務管理

다. 事業全般에 關한 綜合的인 計劃

(42) 규 칙

- 라. 事故處理
- 마. 所管事業特別會計의 支出
- 바. 所管歲入歲出外 現金과 有價證券의 出納保管
- 사. 事業用資産의 購置 用役 運搬 및 貸借契約
- 아.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財務係

- 가. 運輸事業特別會計의 收入
- 나. 所管豫算配定 및 決算
- 다. 企業會計出納의 總括
- 라. 運輸事業特別會計 起債와 償還
- 마. 事業用財産의 取得
- 바. 事業用財産臺帳의 整備
- 사. 金庫에 關한 事項

3. 施設係

- 가. 運輸事業用車輛運轉管理
- 나. 車輛의 代替計劃
- 다. 機械, 器具類 改良計劃
- 라. 運輸事業用施設의 改善과 維持管理
- 마. 運輸事業用 油類配定과 調整
- 바. 運輸事業用資材의 需給計劃
- 사. 所管事業所의 指導監督

第24條 第2項 第1號「社會系」分掌事務中「사」를 削除하고 「자」「아」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사. 派越將兵支援 및 家族의 援護에 關한 事項
- 아. 課內庶務 및 局內地課係 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產業局) ①產業局이 商務課, 工業課, 燃料課, 農政課, 糧政課와 綠地課를 둔다

②局長은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 商務課長, 工業課長, 燃料課長, 農政課長과 糧政課長은 行政書記官으로 綠地課長은 林業技正 또는 行政書記官으로 補한다

第3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3條(商務課) ①商務課에 商政係, 物價分析係와 計量係를 두고 商政係長과 物價分析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計量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機械技佐 또는 地方機械技佐로 補한다

②商務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商政係

- 가. 局所管行政의 綜合調整
- 나. 商工會議所 商品去來所 其他 商業團體의 指導監督
- 다. 市場管理에 關한 指導監督
- 라. 市場 및 百貨店開設許可
- 마. 商道義昂揚
- 바. 課內庶務 및 局內他課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物價分析係

- 가. 物價調査 및 物價分析에 關한 事項
- 나. 物價調整에 關한 事項
- 다. 消費者保護에 關한 事項
- 라. 正札制實施 및 示範店舖 指導育成
- 마. 生活必需品의 品質檢査
- 바. 서울特別市物價調整委員會運營

3. 計量係

- 가. 計量의 研究 및 調査
- 나. 計量檢査 및 檢定
- 다. 메타法實施에 關한 事項
- 라. 計量器事業管理

第33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4) 규 칙

第33條의 2 (工業課) ①工業課 Ⅱ 工政係, 中小企業係와 輸出振興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②工業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工政係

- 가. 工業地域造成 및 開發
- 나. 鑛과 造船에 關한 事項
- 다. 工業標準化
- 라. 自動車組立工場指導
- 마. 工業開發委員會運營
- 바. 優良工產品 獎勵委員會運營
- 사.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中小企業界

- 가. 中小企業育成計劃樹立
- 나. 專門化 및 系列化促進
- 다. 輸出轉換業體育成
- 라. 中小企業의 市費財政支援
- 마. 特化産業育成
- 바. 中小企業協同組合設立認可 및 指導監督
- 사. 零細企業育成
- 아. 工場現況把握

3. 輸出振興係

- 가. 輸出振興에 關한 綜合施策의 樹立
- 나. 輸出市場調査 및 開發
- 다. 輸出業體助成 및 輸出獎勵
- 라. 輸出關係諸般統計
- 마. 輸出業體 및 軍納業體申告
- 바. 其他 輸出入業務

第33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3條의3(燃料課) ①燃料課에 燃料係와 燃料改良係를 두고 燃料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燃料改良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化工技佐로 補한다

②燃料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燃料係

- 가. 燃料의 需給計劃樹立
- 나. 原炭配定
- 다. 無煙炭需給生産에 關한 統制監督
- 라. 鑛業에 關한 事項
- 마. 서울特別市燃料對策委員會運發
- 바.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燃料改良係

- 가. 石油類, 煤스熱管理, 液體燃料, 代用燃料의 需給 및 管理
- 나. 燃料煤스化技術研究 및 關係工場 指導育成
- 다. 其他 燃料代替 및 改良에 關한 事項
- 라. 自家用電氣工作物에 關한 事項

第34條 第1項 및 第2項 第1號와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 第3號를 削除한다

①農政課에 農政係, 農産係와 畜政係를 두고 農政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農産係長은 地方農業技佐로 畜政係長은 地方畜産技佐 또는 地方獸醫官補로 補한다

1. 農政係

- 가. 農業行政의 綜合調整
- 나. 農業團體의 指導育成 및 農業企業에 關한 事項
- 다. 農地에 關한 事項
- 라. 漁業 및 漁船建造에 關한 事項
- 마. 水産用資材需給調節 및 水産資源調査
- 바. 水産増殖 및 水産製造에 關한 事項

(4 6) 규 칙

사. 水産團體 指導監督

아.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農産係

가. 農産増産 및 獎勵計劃

나. 畜作, 田作 및 特種作物에 關한 事項

다. 農産調査 및 統計

라. 農産資材需給

마. 土地改良(水利, 開墾)에 關한 事項

第37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 第1號「建設行政係」分掌事務中「라」局所管事業所의 指導監督을「라 土木試驗所, 東部 및 南部建設事業所의 指導監督」으로 하고 第2項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管理課에 建設行政係, 公地管理係, 補償係와 重機管理係를 두고 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4. 重機管理係

가. 建設工事用 各種 重機의 登錄

나. 建設工事用 各種 重機의 檢査

다. 重機關係 各種證明서 發給

라. 其他 重機에 關한 事項

제39조 제2항 제1호(시설제)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제

가. 新設道路鋪裝工事に 따른 調査, 測量, 設計 및 施工監督

나. 瀝青事業所의 運營과 指導監督 및 生産에 關한 事項

다. 東部 및 南部建設事業所의 포장에 對한 技術的指導監督

라.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第40條 第2項 第3號「下水管理係」分掌事務中「다」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 製管事業所運營과 指導監督 및 生産에 關한 事項

第42條 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水道局에 業務課, 경리과, 水源課, 給水課와 施設課를 둔다

②局長은 施設技監 또는 建設廳技監으로 業務課長은 行政書記官 財經書記官 또는 地方行政書記官으로 경리과장은 財經書記官 또는 地方財經書記官으로 水源課長, 給水課長과 施設課長은 土木技正 또는 地方土木技正으로 補한다

第4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3條(業務課) ①業務課에 庶務係, 豫算係, 課徴係와 調査係를 두고 庶務係長, 調査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豫算係長은 地方財經事務官으로 課徴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財經事務官으로 補한다

②業務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庶務係

- 가. 局所管行政의 綜合調整
- 나. 局所管各事業所의 指導監督
- 다. 水道諮問委員會運營
- 라. 水道關係法規整備
- 마. 上水道施工業者의 營業許可 및 指導
- 바. 局內事務用品의 出納保管
- 사. 水道案內 및 水道案內電話交換臺運營
- 아. 課內庶務 및 局內他課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豫算係

- 가. 上水道事業運營의 綜合的計劃樹立 審査分析 및 調整과 事業新設의 改善
- 나. 所管事業의 原價計算
- 다. 上水道事業費豫算執行
- 라. 上水道事業費의 配定 및 決算
- 마. 上水道事業費의 起債과 償還
- 바. 上水道事業費歲入歲出 總括現計 및 豫計

3. 課徴係

- 가. 給水使用料 其他 歲外收入調整計劃 및 統制

(48) 규 칙

나. 給水使用料 徵收計劃 및 統制

다. 水道事業費 歲入現計

라. 特殊用課徵

4. 調査係

가. 給水使用料關係 民願書類處理

나. 給水條例違反者摘發處理 및 指導

다. 課徵事務의 調査 및 指導

第44條를 削除한다

第45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 第3號를 新設한다

第45條(경리과) ①경리과에 訓導係, 經理係와 管財係를 두고 訓導係長과 經理係長은 地方財經事務官으로 管財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한다

3. 管財係

가. 上水道事業用 資材出納保管 및 需給計劃

나. 上水道事業用 固定資產의 管理取得 및 處分

다. 上水道事業用 機械의 整備運營

라. 上水道事業資產運轉整備 및 倉庫運營

마. 上水道事業用 自動車 電話 및 光熱의 管理

附 則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中 事實上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範圍에 關한 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2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19號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中 事實上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範圍에 關한 規則

營利業務의 限界 및 事實上勞務에 從事하는 地方公務員의 範圍에 關한件 第

3條의 規定에 依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中 事實上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이라 함은 別表에 規定한 現業機關의 作業現場에서 勤務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庶務, 人事, 物品出納, 經理, 機密 또는 勞務者의 監督事務에 從事하
는 者는 除外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別表

職 名	現 業 機 關
電 車 運 轉 員	서울特別市電車運輸事業所
電 車 車 掌	서울特別市運輸事業工作隊
電 車 信 號 手	
軌 道 工	
電 車 修 備 工	
檢 車 工	
自 動 車 運 轉 員	
熔 接 工	
旋 盤 工	
木 工	
鍛 冶 工	
電 工	
設 計 工	
指 導 員	
警 備 員	
搜 檢 工	
捲 線 工	
塗 裝 工	
雜 役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2月 28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20號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3級乙類欄中「地方財經事務官 37」을 「地方財經事務官 30」으로 「地方行政事務官 191」을 「地方行政事務官 194」로 「地方土木技佐 31」을 「地方土木技佐 36」으로 「地方建築技佐 5」를 「地方建築技佐 4」로 하고 「計 321人」을 「計 327人」으로 한다

4級甲類欄中「地方財經主事 38」을 「地方財經主事 39」로 「地方行政主事 640」을 「地方行政主事 641」로 「地方機械技士 15」를 「地方機械技士 16」으로 「地方林業技士 4」를 「地方林業技士 6」으로 「地方看護技士 10」을 「地方看護技士 15」로 「地方土木技士 75」를 「地方土木技士 77」로 하고 「計 970人」을 「計 982人」으로 한다

4級乙類欄中「地方財經主事補 72」를 「地方財經主事補 71」로 「地方行政主事補 454」를 「地方行政主事補 480」으로 「地方機械技士補 20」을 「地方機械技士補 19」로 「地方林業技士補 8」을 「地方林業技士補 10」으로 「地方藥務技士補 9」를 「地方藥務技士補 12」로 「地方保健技士補 39」를 「地方保健技士補 48」로 「地方土木技士補 99」를 「地方土木技士補 103」으로 「地方建築技士補 24」를 「地方建築技士補 31」로 하고 「計 873人」을 「計 922人」으로 한다

5級甲類欄中「地方行政書記 1,114」를 「地方行政書記 1,142」로 「地方機械技員 23」을 「地方機械技員 21」으로 「地方化工技員 4」를 「地方化工技員 5」로 「地方林業技員 12」를 「地方林業技員 14」로 「地方藥務技員 13」을 「地方藥務技員 15」로 「地方土木技員 98」를 「地方土木技員 115」로 「地方建築技員 31」을 「地方建築技員 44」로 하고 「計 1,677人」을 「計 1,743人」으로 한다

5級乙類欄中「地方行政書記補 1,553」을 「地方行政書記補 1,628」로 「地方機械技員補 28」를 「地方機械技員補 33」으로 「地方藥務技員補 15」를 「地方藥務技員補 19」로 「地方保健技員補 51」을 「地方保健技員補 52」로 「地方看護技員補 165」를 「地方看護技員補 160」으로 「地方土木技員補 112」를 「地方土木技員補 153」으로 「地方建築技員補 66」 다음에 「地方地籍技員補 9」를 新設하고

「計 2,411人」을「計 2,541人」으로 한다

合計欄中「一般職公務員計 6,280」을「一般職公務員 6,543」으로「技能職公務員 813」을「技能職公務員 782」로「雇傭員計 1,093」을「雇傭員計 1,216」으로 하고「合計 8,189人」을「合計 8,544人」으로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사 령

○서기 1967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청소국장	행정부이사관	김	진	오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산업국장	경관이사관	박	수	복
서울특별시 청소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	경관이사관	이	종	선
서울특별시 산업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내무국장	경관이사관	김	윤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에 보함				
종로구 지방임업지원보	직	명	안	
용산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임업지원	직	장	장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임업지원보	이	기	무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임업지원보	직	장	수	
임업지원보에 임함				
영등포구 지방임업지원보	김	종	서	
임업지원보에 임함				
성동구 지방임업지원보	오	민	숙	
임업지원보에 임함				

(52) 사 병

임업기원보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임업기원보	김	영	재
마포구 근무를 명함				
임업기원보에 임함	용산구 지방임업기원보	김	진	욱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임업기원에 임함	영등포구 지방임업기원	유	영	상
	영등포구 지방임업기원보	황	종	호
	영등포구 지방임업기원보	박	종	길
임업기원보에 임함				
	성동구 지방임업기원보	우	상	명
임업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 지방임업기원	손	근	토
임업기원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임업기원에 임함	서대문구 지방임업기원	박	창	입
	중구 지방행정주사	유	권	기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정	성	진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최	장	훈
행정주사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우	병	일
행정주사보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	김	이	순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김	종	연

행정서기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송	총	열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보에 임함	양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송	계	정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이	수	관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박	순	원
행정서기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조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삼	경
종로구 근무를 명함			수
		안	명
		이	원
조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관
중구 근무를 명함			
		연	익
조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훈
성북구 근무를 명함			
		양	승
조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석
마포구 근무를 명함			
		이	윤
조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수
용산구 근무를 명함			
		홍	순
		손	환
			국

(54) 사 명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임	영	환
	유 길 이	정 동 석	걸 현 권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송	정	현
	김 강	봉 문	열 경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송	제	영
	홍 유	준 소	의 봉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김	용	태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미 이	연 주	취 일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안 채 길 이	민 왕 순 종	환 석 례 기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인 이	형 명	운 승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임 길 달	석 구 제	진 석 은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임 각 관 산 남 관 각	김 덕 구 종 상 민 종	인 관 섭 태 도 수 호

(56) 사 령

	회	선	목
조건부 지방화공기원보에 입함 수원과 근무를 명함	오	상	천
조건부 지방화공기원보에 입함 독도수원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	홍	경	선
조건부 지방화공기원보에 입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최	화	형
조건부 지방기계지원보에 입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강	석	열
조건부 기계지원보에 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등부공익전당포 지방조무수 번	택	외	
영등포공익전당포 근무를 명함			
안암공익전당포 지방조무수 이	원	출	
용산공익전당포 근무를 명함			
서북공익전당포 지방조무보조수 강	영	도	
안암공익전당포 근무를 명함			
용산공익전당포 지방조무수 조	명	호	
등부공익전당포 근무를 명함			
영등포공익전당포 지방조무수 박	선	양	
서북공익전당포 근무를 명함			
	손	홍	규
조건부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보건사회국 사회과 근무를 명함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김	현	희
용산구보검소 근무를 명함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하	근	설
종로구보검소 근무를 명함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김	태	기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2월 1일			
용산구 지방조무수(자동차운전)	홍	경	현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내무국총무과 지방조무수(자동차운전)	김	제	환
용산구 근무를 명함			
시립마포병원 지방조무수(자동차운전)	강	상	원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내무국총무과 지방조무수(자동차운전)	임	복	득
시립마포병원 근무를 명함			
보건사회국사회과 지방조무수(타자)	두	순	자
관광운수국 관광과 근무를 명함			
청소국청소제1과 지방조무수(타자)	여	익	자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2월 5일			
충남 논산군	尹	文	煥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5 8) 사 명

◎서기 1967년 2월 6일

중부병원 조진부지방간호지원보 안 용 경
본인불출두로 인하여 1967년 1월 20일자 신규임용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이 완 주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 영 식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조 중 철

조진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서무과 근무를 명함

김 홍 배

조진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오 중 규
변 중 수

조진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 중 상
김 영 원

조진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차 천 복
박 영 순
김 용 해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	기	화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	기	익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김	중	원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강	관	호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송	은	섭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박	중	수
조건부 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	용	선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구	미	홍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김	재	봉

(6 0) 사 명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최	수	봉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	만	석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박	명	현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김	대	수
	임	광	태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김	태	배
	김	용	득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최	재	춘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박	성	만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박	성	기
조건부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허	무	석

조건부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	중	규
조건부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시기 1967년 2월 7일			
내무국총무과 지방통인수	변	경	외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시기 1967년 2월 14일			
기획관보좌 지방행정주사보	진	병	중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기계기사	김	영	호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규	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시기 1967년 2월 15일			
충남 내덕군	서	우	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김	상	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기획관 보좌를 명함			
경제기획원	김	중	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62) 사 령

지방재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통계관 보라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 노	윤	표	
공무원교육원경 양경과 근무를 명함 단점무치 근무를 명함			
	홍	사	성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도시계획국 주택과 근무를 명함			
수도국경리과 재정서기관 경	의	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농림과농지계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승	익	
연료과 연료계장에 보함			
주택과기술계장 지방건축기과 고	연	복	
주택과 건설계장에 보함			
운수사업과 운수사업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장	양	관	
운수사업과 시설계장에 임함			
상무과 물가조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희	수	
상무과 물가분석계장에 임함			
공민과연료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조	권	
연료과 연료개발계장에 보함			
주식과예산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성	증	식	
업무과 예산계장에 보함			
주제과과정계장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	홍	순	
업무과 과정계장직무대리를 명함			
연구과관계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중	민	

정리과 편제계장에 보함

○서기 1967년 2월 16일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 윤	강	국
성북구 근무를 명함	의학과 지방행정주사 조	계	선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윤	우	갑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신	우	용
마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주사 박	지	창
병정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강	우	석
성북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유	병	전
중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광	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권	하	문
결직을 면함	영등포구경농경과 지방농업기사로 이	복	득
마포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차	덕	호
종로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안	석	대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노	연	대
	신촌보조수원지 지방행정서기 김	형	배

(6 4) 사 령

동대문구지관재과 지방행정서기보	목	영	진
접직을 면함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이	강	탁	
용산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유	용	태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문	성	덕	
성북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홍	대	권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유	한	인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	명	희	
중구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	진	우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유	한	석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서	인	규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	원	찬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경	창	용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동	순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중	수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유	경	인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주사 손	완	주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사 명 (55)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경	현	철
성동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신	봉	홍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이	종	환
성북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권	성	윤
중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용	수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세경과	지방행정서기	조	광	태
중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염	무	실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사제주사보	신	영	석
성북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사제서기보	김	제	술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사제서기보	전	성	배
중구	지방사제서기보	김	구	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사제서기보	홍	석	웅
용산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사제주사	노	세	혁
성동구	지방사제주사	안	도	영
용산구	지방사제주사보	김	환	기
마포구	지방사제주사보	장	전	제
세경과 근무를 명함				

(6 6) 사 명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세정과 지방사세주사 박	봉	일
	세정과 지방사세주사 경	강	희
	세정과 지방사세주사 김	재	영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세정과결마포구 지방사세주사보 이	상	병	
본직을 면하고 겸직에 전임함			
◎서기 1967년 2월 20일			
서대문구 지방감시수 이	제	석	
건축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기계지원보 한	상	택	
복직을 명함			
	양주군 김	봉	림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	승	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7년 2월 21일			
공무원교육원교수부 지방행정서기관 김	택	수	
공무원교육원 사무과장직무대리를 명함			
도시계획국건축과 지방건축기과 한	기	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1 제1항 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건축과제3제장 지방건축기과 이	조	영	
건축과 제1제장에 보함			

◎서기 1967년 2월 24일

서울시수도국경리과장 제경서기관 정 의 전
원래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2월 25일

윤수사업과 지방재경사무관 이 년 환
경리과 조달재장에 포함

◎서기 1967년 2월 28일

도시계획국국회경리과 지방조무보조수(제도) 서 제 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2월 8일

호적병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이 계 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2월 15일

삼양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김 應 福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제에 처함

성북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홍 鍾 福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제에 처함

강석동 지방행정서기보 田 南 壽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봉 5월에 처함

인수동 지방행정서기보 申 成 燮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서기 1967년 2월 24일

청소과 지방행정주사 李 鍾 阿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제에 처함

삼양제2동 지방행정주사 이 명 성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봉 1월에 처함

서선동 지방조무보조수 鄭 壽 東

지방 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3호(병역외무)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7년 2월 6일

도화제2부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下 忠 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2월 8일

염리동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이 명 승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7년 2월 20일

염리동 지방행정서기보 박 윤 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7호

축산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7년도 경기축육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다

서기 1967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실시범위 : 서울특별시지역
2. 실시기간 : 1967년 3월 25일 1967년 4월 20일
3. 검사대상 : 한우, 육우, 유우, 마, 면양, 산양, 돈.
4. 검사장소 : 종축검사 신청서에 의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
5. 검사방법 : 종축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은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종
축검사원이 순회하여 검사 하겠음다

◎서울특별시고시제8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 한
다

서기 1967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해제지	잔면적	주 소
구	동	지번					
영등포	보통	동산79-4	임야	0.8900	0.8900	0.8900	서울특별시
〃	〃	79-6	〃	0.2800	0.2800	0.2800	〃
〃	〃	79-7	〃	0.0700	0.0700	0.0700	〃

2. 해제사유

본임야는 1953년도에 사망지정을 하고 1953년 1953년도에 사망사실을 한지
대로 산림협의 타용도로 이용함이 타당하여 지경의 목적달성으로 해제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1호

1967년 1월 25일자로 시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시장
을 개설허가 하였기 공고함

1. 시장명: 승인시장 (崇仁市場)
 2.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60-5·465-6
 3. 개설자: 대한산업주식회사 대표 강갑득 (姜甲得)
 4. 면 적: 4,235.6 M² (1,281평)
 5. 시 설: 가. 점포수 76개
나. 전평 964.96M² (298평)
다.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내화구조
라. 기타 시설 시장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한 저지선
- 서기 1967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22호

제1종양 토지구획경리지구 일부 한지변경 치분한 1964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공고제548호는 대법원판결에 의거 이를 취소하고 환지지역은 1962년 3월 16일 공고제677호에 의한다

서기 196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공고제23호

서울특별시 공고제7호(1967년 1월 23일)로 공고한 내용중 내무부고시 제23호(1952년 3월 25일) 및 건설부고시 제444호(1963년 7월 13일)로 추가 정정 공고한다

공사명 신수동—염리동간 도로공사

토지의 세목은 별지 토서와 같음

서기 196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토 지 조 서

순위	재산소재지	번 지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1	마포구 염리동	148-34	지	3	김 주 현	고양금융조합	
2	〃	148-11	〃	35.9	김 규 현	없 음	
3	〃	148-38	〃	4	임 기 수	〃	
4	〃	148-36	〃	5	임 거 수	〃	
5	〃	148-37	〃	214	임 용 식	〃	
6	〃	153-2	〃	106	상공회의소	〃	
7	〃	154-17	〃	4	신 용 범	〃	
8	〃	154-19	〃	29	신 용 범	〃	
9	〃	154-21	〃	20	신 용 범	〃	
10	〃	154-15	권	84	정 천 목	마포구공덕동378-6	
11	〃	151-2	〃	0.5	박 부 상	마포구염리동82	

12	마포구 열리동	156-3	✧	27.1	박 부 상	없	음
13	✧	155-5	대	400	제일주정회사	✧	
14	✧	155-7	✧	557	✧	✧	
15	✧	155-9	✧	0.2	이 동 수	마포구열리동155-7	
16	✧	178-30	✧	4	진 낙 대	✧	
17	✧	178-29	대	15	문 벽 선	없	음
18	✧	179-1	✧	2	이 순 화	✧	
19	✧	179-2	✧	36	✧	✧	
20	✧	180-1	✧	96	영 칠 관 식	✧	
21	✧	180-2	✧	27	박 아 기	✧	
22	✧	180-21	✧	2	서 경 식	✧	
23	✧	130-22	✧	1	김 기 숙	✧	
24	✧	154-14	전	114	김 경 권	✧	
25	마포구 대흥동	197-2	대	1	민 경 경	없	음
26	✧	196-1	✧	19.5	신 현 식	✧	
27	✧	194-3	✧	5	민 순 주	✧	
28	✧	195-1	✧	53	김 기 원	✧	
29	✧	200-2	✧	83	이 순 제	✧	
30	✧	201-1	✧	35	신 상 굴	마포구열리동84-3 250,000원 한국상업은행	
31	✧	201-2	✧	47	✧	✧	
32	✧	202-12	✧	2	박 광 선	없	음
33	✧	203-2	✧	42.9	송 부 식	✧	
34	✧	204-2	대	22	김 대 권	없	음
35	✧	202-13	✧	9	조 천 관 식	✧	
36	✧	202-14	✧	9	김 경 인	✧	
37	✧	202-15	✧	✧	조 명 원	✧	
38	✧	209-1	✧	45	김 리 옥	마포구대흥동129	
39	✧	209-2	✧	1	배 차 권	없	음
40	✧	210-2	✧	27	장 규 옥	✧	

(12) 목 고

41	마포구 대흥동	190-2	35	최 현 학	◇		
42	◇	187-1	27	임 우 태	◇		
43	◇	186-2	8	부 영 인 호	◇		
44	◇	185-3	11	재 단 법 일 원	◇		
45	◇	140-4	49	안 흥 록	◇		
46	◇	150-3	5	이 상 섬	◇		
47	◇	138-1	90	이 태 식	◇		
48	◇	137-2	11	김 숙 선	◇		
49	◇	136-1	56	정 군 명	◇		
50	◇	133-1	49	김 원 용	마포구대흥동283	임성재	
51	◇	132-2	2	원 오 봉	없 음		
52	◇	131-2	5	최 친 만	◇		
53	◇	154-1	14		용산구동빙고동45 남원옥순		
54	◇	130-1	17	김 정 순	없 음		
55	◇	129-1	38	김 기 욱	◇		
56	◇	262-2	8	정 덕 화	◇		
57	◇	263-3		홍 정 디	◇		
58	◇	263-4	6	김 동 수	◇		
59	◇	265-3	17	남 연 구	마포구도업동79 한일은행 3,200,000	남연구	
60	◇	267-3	34	◇	없 음		
61	◇	267-3	34	남 정 구	◇		
62	◇	269-1	36	김 영 만	◇		
63	◇	270-3	3	이 치 중	◇		
64	◇	271-3	31	이 태 동	◇		
65	◇	272-2	175	김 경 천	◇		
66	◇	276-2	29	김 경 천	◇		
67	◇	283-4	19	◇	◇		
68	◇	234-1	59	박 종 인	조흥은행 230,000 법정 390,000		
69	◇	288-2	0.5	홍 단 이	없 음		

70	마포구 내룡동	285-1	◇	27	운 회 순	◇	
71	◇	285-2	◇	2	◇	◇	
72	◇	318-1	◇	40.5	이 운 용	◇	
73	◇	322-1	◇	43	이 외 용	◇	
74	◇	90-13	◇	9.7	배 인 호	◇	
75	◇	90-14	◇	2.3	◇	◇	
76	◇	118-14	◇	27	정 철 현	◇	
77	◇	118-7	◇	20	김 영 기	◇	
78	◇	118-10	◇	36	조 용 성	◇	
79	◇	111-2	◇	17	이 석 삼	마포구내룡동110이석삼	
80	◇	109-2	◇	25	김 단 례	마포구내룡동110이석삼	
81	◇	107-2	◇	40	중구저동2가■ 김진순외28명	있	없
82	◇	107-1	◇	34	◇	내룡동107 이남구	
83	◇	105-1	◇	31.9	박 장 서	없	습
84	◇	105-3	◇	0.1	◇	◇	
85	◇	105-4	◇	23	강 경 복	◇	
86	◇	106-1	◇	29	김순진외2인	◇	
87	◇	93-4	◇	23	배 인 호	서대문구현자동107	이석삼
88	◇	90-20	◇	7	◇	있	없
89	◇	90-9	◇	24	◇	마포구내룡동186이석삼	
90	◇	90-24	◇	2.8	◇	◇	
91	◇	79-11	◇	7	◇	◇	
92	마포구 신수동	22-54	◇	5	김 종 람	있	◇
93	◇	22-55	◇	10	장 순 용	◇	
94	◇	22-34	◇	7	배 인 호	내룡동118 배인호	
95	◇	22-17	◇	7	◇	완의인 재경은	◇
96	◇	1-5	◇	8	김 대 남	◇	
97	◇	9-7	◇	24	정 권 영	◇	
98	◇	10-4	진	13	김 당 진	◇	

99	마포구 신수동	34-31	◇	6	강 우 현	◇		
100	◇	34-30	대	7	허 병 성	◇		
101	◇	34-29	◇	8	채 의 식	◇		
102	◇	34-28	◇	8	정 임 회	◇		
103	◇	34-12	전	16	이 태 식	◇		
104	◇	22-58	대	6	배 인 조	◇		
105	◇	22-61	◇	348	문 종 식	◇		
106	◇	22-59	◇	11	안 복 상	◇		
107	◇	22-56	◇	0.5	배 인 호	◇		
108	◇	1-4	◇	387	서 강 대 학	마포구신수동1-1 서강대학		
109	◇	22-53	전	8	심 명 진	없	음	
110	◇	33-4	◇	8.3	채 병 은	◇		
111	◇	33-3	◇	6	이 당 신	마포구신수동34-3 이용선		
112	◇	34-1	대	35	김 창 수	없	음	
113	◇	33-1	◇	4	조 동 변	◇		
114	◇	33-6	◇	9	◇	◇		
115	◇	33-9	◇	18	박 성 기	◇		
116	◇	32-4	◇	5	◇	◇		
117	◇	12-6	전	25	심 명 진	◇		
118	◇	83-3	◇	195	서 강 대 학	◇		
119	◇	82-19	전	246	◇	◇		
120	◇	82-3	◇	94	◇	◇		
121	◇	81-75	대	4	정 문 원	◇		
122	◇	81-74	◇	8	이 상 준	◇		
123	◇	81-71	◇	135	변 욱 용	◇		
124	◇	82-20	전	14	서 강 대 학	◇		
125	◇	63-12	대	441	농업협동조합	마포구신수동63-7	최병준	
126	◇	81-39	◇	117	김 철 용	동대문구창신동457-67 성동구신당동366-121	이화인 김제용	
127	마포구 업터동	154-11	대	14	홍 금 순	없	음	전필지

128	마포구대흥동	90-2	◆	20	김 기 복	◆	◆
129	◆	90-3	◆	21	배 인 호	◆	◆
130	◆	90-10	◆	12	◆	◆	◆
131	◆	110	◆	12	이 석 관	◆	◆
132	◆	122-2	◆	21	이 규 완	◆	◆
133	◆	122-3	◆	32	정 수 근	◆	◆
134	◆	123	◆	39	주 경 욱	◆	◆
135	◆	124	◆	44	은 도 업	◆	◆
136	◆	125	◆	51	김 영 성	◆	◆
137	◆	93-3	◆	21	배 인 호	서대문원저지107대각구	◆
138	◆	126	◆	50	김 금 탄	없	◆
139	◆	127	◆	13	이 순 관	◆	◆
140	◆	128	◆	28	김 원 용	◆	◆
141	◆	134	◆	29	장 유 순	◆	◆
142	◆	135	◆	18	홍 순 용	◆	◆
143	◆	138-2	◆	15	이 사 봉	◆	◆
144	◆	139	◆	48	이 성 너	◆	◆
145	◆	140-2	◆	54	최 희 창	의주로2가16서울수산주식회사 100,000	◆
146	◆	141	◆	11	정 만 흥	없	◆
147	◆	142	◆	15	◆	◆	◆
148	◆	184	◆	55	반 도 학 원	중구산림동89반도학원	◆
149	◆	185-2	◆	15	◆	없	◆
150	◆	187-2	◆	16	최 순 창	마포구대흥동190최순창	◆
151	◆	188	◆	14	◆	◆	◆
152	◆	189	◆	15	전 천 만	없	◆
153	◆	200-1	◆	10	이 경 이	◆	◆
154	◆	203-1	◆	8	신 상 준	마포구열리동4-3상관상업은행 250,000	◆
155	◆	238	◆	114	김 우 석	없	◆
156	◆	271-1	◆	58	김 기 환	◆	◆

(76) 공 고

157	마포구 대흥동	273-1	6	심 명 전	〃
158	〃	273-2	15	〃	〃
159	〃	274	18	〃	〃
160	〃	275-1	8	이 경 태	275-2 이정택
161	〃	275-2	54	〃	〃
162	〃	283-1	37	임 성 재	없 음
163	〃	283-3	16	심 재 하	〃
164	〃	319	12	박 순 문	〃
165	〃	320	23	심 중 현	〃
166	〃	322-1	19	이 의 용	〃
167	〃	321-2	16	이 윤 용	마포구대흥동318 이윤용
168	마포구 신수동	34-6	24	이 종 업	농업은행 70,000 동협 70,000
169	〃	34-7	89	이 태 식	없 음
170	〃	34-9	35	이 용 순	〃
171	〃	34-10	28	이 용 화	중구산림동114 최갑만
172	〃	34-11	31	김 복 선	있 음
173	〃	81-6	34	김 계 용	동대문구김선동366-191 김계용
174	〃	82-10	전 80	부국공영회사	없 음
175	〃	83-2	전 55	시 강 대 학	없 유
176	〃	8-5	11	손 윤 숙	마포구신수동9-1 손윤숙
177	〃	8-6	19	이 남 순	마포구신수동9-3 이남순
178	〃	8-8	전 13	정 원 일	동대문구용두동205-9 정원일
179	〃	9-1	37	조 진 현	청파동121-3 조진현 조흥은행 140,000
180	〃	9-3	18	이 남 순	없 음
181	〃	9-4	14	이 영 경	〃
182	〃	9-5	전 6	정 원 일	동대문구용두동205-9 정원일
183	〃	9-6	28	이 태 수	있 음
184	〃	9-8	33	전 석 연	〃
185	〃	22-7	11	전 재 수	〃

186	마포구 신수동	22-19	◇	36	나 인 굴	◇
187	◇	22-20	◇	31	신 순 석	◇
188	◇	22-33	◇	15	배 인 호	22-34 비인호
189	◇	22-58	◇	3	◇	없 음
190	◇	34-3	전	27	이 용 선	◇
191	◇	34-4	◇	25	채 명 은	◇
192	◇	8-4	◇	28	김 명 권	◇
193	◇	22-16	내	2	남 영 구	마포구도일동79 남영구
194	◇	22-26	◇	4	신 순 석	없 음
195	◇	34-8	전	17	이 태 석	34번지
196	◇	87-2	◇	3	박 경 자	없 음
197	마포구 신수동	87-3	전	0.2	박 경 자	서울도보원시각강면가 주리255 박경자
198	마포구 압리동	148-30	내	27	최 남 석	없 음

◎서울특별시공고제3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독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에정지를 구획
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과 같이 지정한다. 환지에정지 지정
사 및 지적도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상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
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7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김 천 숙

◎서울특별시공고제25호

독극물에 관한 시험실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독극물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다.

서기 196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천 숙

(78) 공 고

1. 시험일시 및 장소 : 1967년 3월 26일 10:00
2. 응시원서제출기일 : 1967년 3월 15일—1967년 3월 22일
3. 응시 원서 제출처 : 당시 조선사회국 의약과
4. 합 격 자 발 표 : 1967년 4월 5일 13:00 당시 후정에 제시함
5. 응 시 자 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심신상실자 심신장애자

나. 농자, 아자, 맹자

다. 아약 기타 독극물 등의 중독자

라. 기타 독극물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결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자필이력서(16필드로 작성) 1통

다. 학력증명서 1통

라. 신원증명서 1통

마. 종합병원 발행 건강진단서 1통

바. 사진3매(신청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절면 상반신명함판)

사. 수입증지 300원(응시원서에 부착)

7.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1) 독극물에 관한 법률

(2) 독극물의 성질과 저장 기타관리방법

(3) 기초화학

나. 실기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독극물의 감정과 그 관리방법

8. 기 타

가. 접수된서류 및 수입증지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의약부에 문의하시라

◎서울특별시공고제26호

시유전물(천거조전부)매각 입찰공고

1. 전 물 표 시 : 1) 동대문 구청내 창고 천거자제
2) 용산구 한강로 3가40 연와동크리드빌 10층
2. 입 찰 일 시 : 서기 1967년 2월 27일 10시
3. 입 찰 장 소 : 당시 재무국 관제과
4.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5. 입 찰 방 법 : 서기 1967년 2월 25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 누
세될증등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환이상 현금이나 시중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부한다
7. 천 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
고 10일 이 에 완전천거하고 경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
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세입으로 귀속조치하
겠음

서기 196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27호

시유재산 매각 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입찰

1. 재산목록

공고 번호	재산의 표시				지목	지 적 비	비
	구	동	지	번			
	성북	수유	102-1외 2필지		대	238.30	수도환지지 235

(8 0) 공 고

2. 입찰장소 : 당시 수도국 입찰실
3. 입찰일시 : 1967년 2월 24일 10:00
4. 입찰등록 : 1967년 2월 23일 16:00 시세국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수도국 업무과에 등록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
로서 동봉 입찰하여야 함
6. 개찰장소 및 일시 : 9월 17일 즉시 개찰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관이
에 고함
7. 매 각 조 건
 -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10이상 자담저축을 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서 3할을 공제한 금액을 납
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함
 - 나. 재산매각후 1년수에 증감이 생할 경우에는 당시가 정하는 가격
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시 업무과에 문의하시말
위 공고함

서기 196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28호

주택건설용 대지 분양공고

1966년도 당시 주택건설용 대지를 다음 요령에 의하여 무주택 시민을 대상
으로 분양함

서기 196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시장 김 현 옥

1. 분양신청절차 가. 준비서류 (1) 분양신청서 (당시 소경양식)
(2) 무가옥증명 1통
(3) 건강증명 1통

2. 매지분양내역

등	명	지구별	분양 필수 필수	분양 당가액	평균 필수 필수	평균 당가액	신청금	비 고
서대문구용암동	A지구	13	4,800	58	278,400	신청 일시불	분양필 수비 지별 당시 치한	
◇	B지구	1	3,350	36	120,600	◇	◇	
서대문구남가파동	A지구	86	3,300	39	148,200	◇	◇	
◇	B지구	33	3,600	58	208,800	◇	◇	
◇	C지구	55	3,300	53	174,900	◇	◇	

단 매지필수 및 금액은 호수에 따라 증감이 있음

3. 접수기간및접수처 : 1967년 2월 27일부터 분양필수에 달하기까지 당시
주택과에서 접수함

4. 접 수 방 법 : 지구별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분양신청자가 호수
를 선정케함

5. 매 금 납 부 방 법 : 일시불로함

6. 기 타 : 상세한 것은 당시 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⑤서울특별시공고제29호

전차 일부 운행계통 임시휴지 및 변경 실시공고

대한문앞 지하도 설치 공사 시행에 따라 공사 현장을 중립한 차량소통의 곤
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차 일부운행계통·임시휴지 및 변경실시
함을 공고함

가. 임시 운휴계통 영등포——시청앞

나. 변경 운행계통 영등포——올지로 입구

다. 실시 일자 1967년 2월 20일~1967년 8월 15일까지

서기 1967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국

⑤서울특별시공고제30호

전철 철거조전부 매각공고

(8 2) 공 고

1. 재산의 표시

공고번호	재산의 소재지	구 조	건평	비 고
1	종로구 삼청동 18-1	목초와가	9평	삼청동법프장건물
2	종구 동자동 30-15	가진물	3평	동자동

2. 입찰일시 : 서기 1967년 2월 28일 10:00

3. 입찰장소 : 당시 수도권 입찰실

4.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5. 입찰등록 : 서기 1967년 2월 27일까지 시세 및 국제납세필증을 첨부하여 입찰등록 신청서를 당시 수도권 업무과에 등록하여야함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1할 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은행의 보증수표(낙찰일이 해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시에 귀속함)

7.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1이상의 자필지속을 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이금을 전액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8. 전 물 천 거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천거하여야 함

9.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당시 수도권 업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서기 196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 옥

◎서울특별시공고제31호

1967년 2월 18일자로 시장집 제4조의 규정이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선서교 시장 개설을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1. 시장명 : 대선서교시장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지구 제2공구 89부락
- 3.개설자 : 대신서교시장 주식회사 대표 문용제 (文容濟)
- 4.면 적 : 797평 53 (2,631.07M²)
- 5.건 평 : 261평 (863.02M²)
- 6.시 설 : 가. 점포수 30개

나. 건물 철근콘크리트 벽화구조

다. 기타시설 시장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모든 시설

서기 1967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접 편 록

◎서울특별시광고제32호

분 포 이 장 공 고

노 제 지	지	번	기 수
서대문구구산동	122-1, 123, 24, 122-2, 126-3, 125-4, 122, 126-5, 132-1, 172, 132-2		192
서대문구학송동	164-1, 181-33, 184-5, 186-1, 184-3, 77-2, 138, 142-2, 14, 15-3, 13-6, 153, 14, 128, 104, 128-2, 110-5, 185-1		170
서대문구신사동	14-2, 142-4, 12-1, 12-2, 16-1, 18-8, 129-1, 12-1, 12-2, 15, 14-1, 71-1, 12-1, 173, 12-6, 13, 11, 16, 14-4, 17-3, 171-3, 170-4, 171, 63, 64, 19-2, 141-1, 170-5, 175		1,978
서대문구연희동	115, 185-2, 185-3, 185-4, 166-15, 79, 35, 24, 31, 27, 36, 28, 15-41, 16-1, 4, 5, 12, 15-13, 6-4, 6-5, 5-15, 10-1, 19-2, 1, 128의 1, 34-2, 51 (국립야)		104
서대문구배조동	172-4, 172-2		7
동대문구연북동	983-2, 983-3, 983-1, 169		51
동대문구방우동	427-4, 71-2, 157, 119, 169, 173-2, 172-2		138
성북구장동	163-1, 160, 159, 158-1, 165, 66, 190-66, 179-5, 179-3, 179-6, 179-1, 176, 177, 191, 173, 179-2, 194-1, 182, 197, 1, 195, 59, 56, 30, 111, 108-2, 110-1, 107-2, 126, 122, 123, 102, 117, 2, 107-4, 122, 122-1, 123, 119, 120, 121, 157-1		984
성북구평문동	163, 164, 166, 155, 156, 157, 15, 8, 146, 144, 125-26, 124, 125, 12, 6, 137, 129		147
성북구변동	1, 2, 3		56

(84) 공 고

성북구수유동	158·1·8-1	58
성북구자암동	268·2·4·418-2·418-1·416·247·248·249	565
영등포구본동	산48-1·산48-3·산48-5·산48-7	20
총 계		5,332

상기 지상에 매립된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 (건설부고시 제8·9·10·11·12호 1967년 1월21일자)를 얻어 사업을 실시중이오니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등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위거 개장할 것을 공고할 다만 연고자는 1967년 4월 23일까지 이장완료하고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신고하여 소정의 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이며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인정하고 당사에서 임의 이장하겠습니다

서기 196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⑤서울특별시공고제38호

건설부 고시 제2912호(1966년 11월 30일)로 고시된 당시도시계획사업 (분량지구 개발사업)인 종로3가~퇴계로간 상가 아파트—트 건립공사 구역내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 사 명 : 종로3가~퇴계로간 상가 아파트—트 건립공사
2. 공고기간 : 1967년 2월 25일~1967년 3월 6일 (10일간)
3. 토지세목 : 별첨조기와 같음

서기 196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鍾 路 私 有 地

구분 순번	재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종로구 종로3가	54	31.4	성북구돈암동 451-1	宋 燕 郁		
2	〃	54-1	3.8	〃	〃		

3	종로구 종로3가	54-2	1.6	성북구돈암동 451-1	宋基鄒
4	◇	55	16.0	◇	◇
5	◇	55-1	1.8	◇	◇
6	◇	55-2	0.8	◇	◇
7	◇	57	30.0	종로구인사동 236	宋美門
8	◇	57-1	2.4	◇	◇
9	◇	57-2	1.2	◇	◇
10	◇	58	22.0	종로4가 52	洪吉源
11	◇	58-1	3.5	◇	◇
12	◇	58-2	1.3	◇	◇
13	◇	59	18.0	◇	◇
14	◇	59-1	1.8	◇	◇
15	◇	59-2	0.8	◇	◇
16	◇	60	1.6	종로3가 60	郭泰榮
17	◇	60-1	2.1	종로3가 60-8	黃錫山
18	◇	60-9	1.3	◇ 60-2	康應煥
19	◇	60-4	12.8	종로3가 60-4 60-2	五鍾平 康應煥
20	◇	171-2	23.4	중구회현동3가 4-1	洪在配
21	◇	171-3	1.8	◇	◇
22	◇	172-1	28.4	성북구행당동 159-6	朴寅奎
23	◇	173	31.0	종로구묘동 24-2	徐純泳
24	◇	174-2	3.2	◇	◇
25	◇	175	36.0	종로구통의동 35-7	白明益
26	◇	175-1	4.9	◇	◇
27	◇	178	27.0	충남문산군연무읍마산리 521	洪性忠
28	◇강사동	106-5	36.9	남대문로4가 64-1 국회화계터강모인	李比典
29	◇	108-2	5.6	종로구장사동 108	李永福
30	◇	109-2	0.9	◇ 109	趙順伊
31	◇	114-2	11.1	대구시북구덕평로4가 162-1	대포이산 崔基定 朴基定 朝化物

32	◇	114-3	1.9	장사동 112	孟榮淑	
33	◇	115-1	56.0	◇ 115	趙泰俊	
34	◇	117-1	78.0	서미문구출판동 53-27	文乙禮	
35	◇	117-2	12.3	마포구신수동 449-15	金源成	
36	◇	117-3	14.0	종로구효제동 105-3	安和容	
37	◇	117-5	2.7	종로구문정동 8	方考卓	
38	◇	117-6	3.1	종로구효제동 176-9	朴天孫	
39	◇	117-7	14.7	◇ 청진동 209	柳奎相	
40	◇	117-8	0.2	◇ 장사동 117	金福順	
41	◇	118	10.0	◇ 장사동 117-2	金日麟	
42	◇	122	9.0	◇ 효제동 176-9	朴天孫	
43	◇	125-2	19.2	◇	◇	
44	종로구 장사동	123-5	8.7	종로구인의동 101-3	朴在英	
45	◇	123-11	5.3	◇ 장사동 125	崔甲順	
46	◇	123-21	1.3	◇ 장사동 123-5	金永悅	
47	◇	123-9	15.0	◇	◇	
48	◇	123-12	22.1	◇ 장사동 123-9	盧海子	松原總 科株式 會社 卜失財 團理事 長
49	◇	182-1	471.2	◇ 문정동 74	清算委員 代表 金弘均	
50	◇	123-14	30.1	◇ 장사동 182-1	李浩彬	
51	◇	123-15	17.0	중구입정동 21	趙氏	
52	◇	132-1	34.0	성동구흥인동 2-17	金富潤	
53	◇	132-2	37.0	종로예지동 151-1	洪鍾和	
54	◇	132-3	48.0	◇ 장사동 133	金慶浩	
55	◇	132-4	32.0	장사동 71 · 132-3	김교하 黃福善	
56	◇	132-11	10.7	◇ 장사동 132-4	申泰鎔	
57	◇	132-6	20.0	◇ 장사동 132-5	李基鎭	
58	◇	132-1	28.1	◇ 장사동 132-6	金振聲	道
59	◇	132-1	25.2	중구입정동 45	呂範均	
60	◇	132-1	43.9	종로장사동 132-8	金基瑞	
				중구문정동 74	李福年	

61	◇	133	39.0	종로강사동 133	金敏浩
62	◇	174-1	10.5	서비문구순화동 102	李亨秀
63	◇	134-2	48.4	영동포동2가 84	崔道行
64	◇	174	22.0	성동구상왕십리 147-4	千永佑
65	◇	172-1	19.6	종로강사동 107	南長銀
66	◇	172-2	9.8	종로락원동 35	金栢任
67	◇	172-3	13.8	종로구장사동 151	田用濟
68	◇	172-6	6.0	◇ 락원동 35	◇
69	◇	165	140.0	경기도평택군평택읍한정리 416	金田任
70	◇	115-2	8.0	종로구장사동 115	崔政厚
71	◇종로3가	60-7	2.7	종로3가 60-4	趙泰俊
계			1,764.90		孟鍾華

鍾 路 國 有 地

구분 순번	재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명 번 지		구	소 실 당	
1	종로구	50-2	15.7		國 有	
2	종로4가	50-4	14.3		◇	
3	◇	50-3	1.0		◇	
4	◇	50-5	1.8		◇	
5	◇	54-3	17.3		◇	
6	◇	54-4	1.7		◇	
7	◇	55-1	10.6		◇	
8	◇	55-2	1.4		◇	
9	◇종로3가	54-3	0.6		◇	
10	◇	56	25.0		국 제	
11	◇	56-1	2.9		◇	
12	◇	56-2	0.9		◇	

(8 8) 풍 고

13	종로구 종로3가	174	27.3	國 有
14	〃	176	12.0	〃
15	〃	177	16.0	〃
16	〃	179	16.0	歸 財
17	〃	179-1	3.5	〃
18	〃	180	18.0	國 有
19	〃장식동	107-1	10.5	〃
20	〃	110	10.0	〃
21	〃	111-1	21.3	〃
22	〃	111-2	8.7	國 有
23	〃	113	19.0	〃
24	〃	114-1	22.0	〃
25	〃	112	14.0	〃
26	〃	116	35.4	〃
27	〃	116-1	2.6	〃
28	〃	117-4	5.0	〃
29	〃	119	35.0	〃
30	〃	120	21.0	〃
31	〃	121-1	4.7	〃
32	〃	122-1	6.0	〃
33	〃	124-1	14.3	〃
34	〃	124-2	15.5	〃
35	〃	123-2	28.1	〃
36	〃	123-3	17.9	〃
37	〃	123-4	17.2	〃
38	〃	123-6	13.1	〃
39	〃	123-7	12.0	〃
40	〃	123-8	18.1	〃
41	〃	123-10	30.1	〃

42	◇	123-16	16.9	兩 有
43	◇	123-17	9.5	◇
44	◇	123-22	16.6	◇
45	◇	123-18	0.2	◇
46	◇	123-19	2.9	◇
47	◇	123-20	6.0	◇
48	◇	134-3	0.1	◇
49	◇	135	15.0	◇
50	◇	135-1	6.0	◇
51	◇	136	8.5	◇
52	◇	136-1	2.5	◇
53	◇	170	0.5	◇
54	◇	170-1	10.8	◇
55	◇	170-2	9.7	◇
56	◇	171-1	10.5	◇
57	◇	171-2	2.7	◇
58	◇	157-4	1.5	◇
59	◇	165-1	1.6	◇
60	◇	165-2	16.4	◇
61	◇	173	29.0	◇
62	◇	175	24.0	◇
63	◇	175-1	6.0	◇
64	◇	172-4	1.1	◇
65	◇	172-5	0.7	◇
66	◇	166-1	21.8	◇
67	◇	166-3	6.6	◇
68	◇	161	6.0	◇
69	◇	161-1	0.2	◇
70	◇	161-2	0.3	◇

(90) 공 고

71	◇	161-3	5.5	◇
72	◇	163-1	5.8	◇
73	◇	164	8.0	◇
74	◇	162	12.0	◇
75	◇	162-1	0.8	◇
76	◇	162-2	3.1	◇
77	◇	162-3	11.1	◇
78	◇	137-1	6.3	◇
79	◇	137-2	8.7	◇
80	◇	140-1	6.1	◇
81	◇	140-2	0.5	◇
82	◇	167-1	0.1	◇
83	◇	143-2	0.2	◇
84	◇	143-3	12.9	◇
85	◇	142-1	7.0	◇
86	◇	141-1	4.4	◇
87	◇	139-2	0.3	◇
88	◇	138-1	3.6	◇
89	◇	157-3	18.5	◇
90	◇	157-1	11.0	◇
91	◇	157-4	6.6	◇
計		1,014.10		

中 區 國 有 地

구분 순번	재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종구산림동	237-1	1.9			國	
2	◇	237-2	18.1			歸 屬	

3	◇	203-4	10.1	◇
4	◇	210	62.0	明
5	◇	211	17.0	◇
6	◇	212	45.0	野 馬
7	◇	214	19.0	四
8	◇	215	44.0	格
9	◇	216-1	34.0	岡
10	◇	216-2	25.0	◇
11	◇	217	45.0	◇
12	◇	218	7.0	◇
13	◇	220-1	13.0	◇
14	◇	220-2	4.0	◇
15	◇	221-1	10.0	◇
16	◇	221-2	2.0	◇
17	◇	222	5.0	◇
18	◇	222-3	7.0	三
19	◇	222-4	0.9	◇
20	◇	141-3	24.2	好 庭
21	◇	145	35.0	◇
22	◇	146	24.0	野 馬
23	◇	146-1	1.3	◇
24	◇	147	15.0	四
25	◇	148	58.0	◇
26	◇	149	39.0	◇
27	◇	150	20.0	◇
28	◇	153-1	30.0	野 馬
29	◇	155-1	15.5	岡
30	◇	156	22.0	◇
31	◇	158	32.0	◇

32	중구산림동	159	24	歸屬
33	〃	160	31.0	〃
34	〃	161	23.0	〃
35	〃	161-1	15.0	〃
36	〃	162-1	0.3	〃
37	〃	162	98.0	〃
		163	20.0	〃
38	〃	167	14.0	國
39	〃	168	19.0	〃
40	〃	169	14.0	歸屬
41	〃	170	28	〃
42	〃	171-2	16.6	國
43	〃	171-3	0.8	〃
44	〃	238-3	5.1	〃
45	〃	190-41	10.2	歸屬
46	〃	278-2	16.3	國
47	〃	236-1	15.5	〃
48	〃	234-1	4.9	〃
49	〃	231-1	15.5	〃
50	〃	228-1	21.0	〃
51	〃	277-1	21.3	〃
52	중구 읍지로4가	4	21.0	〃
53	〃	6-1	11.0	歸屬
			31.7	〃
54	〃	1-3	1.4	〃
55	〃	7	1.0	〃
56	〃	8	21.0	〃
57	〃	9	31.0	〃
58	〃	10-2	21.0	〃
59	〃	10-3	11.9	〃
			31.1	〃
60		10-4	11.7	國
			11.3	

61	중구 울지로4가	10-5	19.0		
62	◇	11	21.0		◇
63	◇	12	1.0		경 屬
64	◇	12-1	6.0		◇
65	◇	15	2.9		◇
66	◇	15	35.0		◇
67	◇	13-1	7.3		◇
68	◇	14-1	10.0		◇
69	◇	11-1	1.0		岡
69	◇	14-2	23.0		경 屬
70	중구산림동	222-1	0.4		岡
計			1,426.2		경 屬

中 區

구분 순번	계산소재지 구 동 명 지 번	수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유 자 성 명	비고
1	중구 울지로4가	310-24	0.9		경 屬
2	◇	310-25	1.6		◇
3	◇	308-1	23.5		◇
4	◇	310-30	0.8		岡
5	◇	310-15	136.0 237.1		◇
6	◇	310-21	19.4		◇
7	◇	304-1	63.0		경 屬
8	◇	305	12.0		◇
9	◇	306	122.0		◇
10	◇	307	19.0		◇
11	중구인현 동1가	4-6	2.8		◇
12	◇	4-7	1.8		◇
13	◇	15-13	0.5		◇

(94) 품 고

14	중구인협 동 1가	18	48.0		
15	◇	19-1	18.0	◇	
16	◇	20-2	2.0	◇	
17	◇	1-1	50.0	國	
18	◇	1-2	44.0	◇	
19	◇	1-3	45.0	◇	
20	◇	1-5	30.0	歸屬	
21	◇	1-6	20.0	國	
22	◇	1-7	44.0	國	
23	◇	1-8	44.0	歸屬	
24	◇	2-1	337.0	◇	
25	◇	3-1	14.0	國	
26	◇	3-2	11.0	◇	
27	중구인협 동 2가	79-1	36.0	歸屬	
28	◇	90-4	0.1	◇	
29	◇	110	10.2 (0.8)	◇	
30	◇	69	18.0	國	
31	◇	70	17.0	◇	
32	◇	65	3.0	◇	
33	◇	71	2.0	◇	
34	◇	72	17.0	歸屬	
35	◇	73	54.0	◇	
36	◇	74	34.0	◇	
37	◇	75	44.0	◇	
38	◇	77	11.0	國	
39	◇	78	13.0	◇	
40	◇	80	17.0	歸屬	
41	◇	82	11.0	◇	
42	◇	83	13.0	國	

43	주공 1기 2가	84	21.0	◆	
44	◆	85	19.0	◆	동 副
45	◆	86	34.0	◆	동 副
46	◆	87	21.0	◆	동 副
47	◆	88	27.0	◆	◆
48	◆	89-1	12.5	◆	동 副
49	◆	89-3	9.7	◆	◆
50	◆	89-4	1.4	◆	◆
51	◆	89-5	0.4	◆	◆
52	◆	90	1.3	◆	동 副
53	◆	92	9.4	◆	◆
54	◆	92-3	12.1	◆	◆
55	◆	92-6	4.3	◆	◆
56	◆	120	17.0	◆	◆
57	◆	122	22.0	◆	◆
58	◆	123	22.0	◆	동 副
59	◆	128-18	44.0	◆	◆
60	◆	121	29.0	◆	동 副
61	◆	112	20.0	◆	◆
62	◆	114	15.0	◆	◆
63	◆	115	28.5	◆	◆
64	◆	113	1.3	◆	동 副
65	◆	115	2.0	◆	◆
66	◆	113	22.0	◆	동 副
67	◆	113	24.0	◆	◆
68	◆	113-1	1.6	◆	◆
69	◆	107-1	19.7	◆	동 副
70	◆ 1가	108-1	6.5	◆	◆
71	◆	117	50.0	◆	◆
		118-1	35.6	◆	◆
		15-1	4.0	◆	동 副
		69-1	17.0	◆	◆
			42.9	◆	◆
			3.6	◆	◆

72	출구인원 2가	90-3	1.6		歸 屬
73	〃	128-28	19.1		國
74	〃	128-17	3.1		〃
	계		2,336.3		

中 區

구분 순번	재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 유 가			비고
	구 동 명	지 역		주	소	성 명	
1	출구인원 1가	104-2	13.1			歸 屬	
2	〃	105-2	38.6			〃	
3	〃	135-16	10.0			〃	
4	〃	135-17	6.1			〃	
5	〃	135-35	1.8			〃	
6	〃	135-36	45.0			〃	
			80.0			〃	
7	〃	135-15	9.0			〃	
			15.0			〃	
8	〃	135-14	4.0			〃	
			2.0			〃	
9	〃	135-20	8.0			〃	
			83.8			〃	
10	〃	135-28	12.0			〃	
			20.0			〃	
11	〃	135-34	4.0			〃	
			5.6			〃	
12	〃	135-50	0.8			國	
13	〃	181-24	34.2			歸 屬	
14	〃	181-67	1.4			〃	
15	〃	181-23	61.5			〃	
16	〃	135-58	1.1			國	
17	〃	181-33	16.0			〃	
18	〃	182-9	57.4			〃	
19	〃	183-1	184.0			〃	
20	〃	183-24	1.2			〃	

21	중구인원 중 2가	191	7.0	경	국
22	◇	191-2	18.0	◇	◇
23	◇	191-3	39.0	◇	◇
24	◇	192-12	3.6	◇	국
25	◇	171-4	0.8	경	국
26	◇	191-5	13.6	◇	◇
27	◇	191-6	11.0	◇	◇
28	◇	192	439.7	◇	국
29	◇	192-6	2.1	◇	◇
30	◇	104-3	2.3	경	국
31	중구중부 로 4가	36-65	0.1	◇	◇
32	◇	36-69	0.7	◇	◇
33	◇	36-70	0.9	◇	◇
34	◇	36-73	3.1	◇	◇
35	◇	36-55	7.0	◇	국
36	◇	36-34	150.2	◇	◇
37	◇	36-44	22.0	경	국
38	◇	36-14	63.0	◇	국
39	◇	36-15	111.3	◇	◇
40	◇	36-23	38.0	◇	◇
41	◇	36-32	11.3	◇	◇
42	◇	29-2	2.1	경	국
43	◇	30-1	31.1	◇	◇
44	◇	30-2	32.1	◇	국
45	◇	30-3	5.3	경	국
46	◇	30-4	27.1	◇	국
47	◇	30-5	24.1	경	국
48	◇	31	129.0	◇	◇
49	◇	32-8	39.7	◇	◇

(98) 품 고

50	◇	32-18	2.5		◇
51	◇	32-7	40.8		國
52	◇	36-68	0.2		◇
		36-67	18.2		◇
53	◇	110-1	22.1		◇
54	◇	116-6	0.3		◇
55	◇	116-7	8.0		◇
56	◇	116-3	37.8		歸屬
57	◇	116-15	2.5		◇
58	◇	117-1	6.0		國
59	◇	117-2	9.0		◇
60	◇	118-2	88.0		◇
61	◇	103-2	1.0		◇
62	◇	120	32.0		歸屬
63	◇	121	52.0		國
64	◇	122	34.0		歸屬
65	◇	122-1	2.0		◇
66	◇	123	88.0		◇
67	◇	117-3	0.0		◇
68	◇	117-4	0.0		◇
	계		2,959.3		
	총 계		6,722.3		

區私有地

구분 순번	재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중구산림동	235	44.0	산림동 235		廉治錄	
2	◇	205-7	23.0	동소문동 6가 52		柳原種	
3	◇	205-6	4.2	◇		◇	

4	중구산림동	205-5	10.5	임계동 55	金裕强
5	◇	205-4	18.1	동소문동 6가 52	柳原鶴
6	◇	206	36.0	산림동 206	鄭致吳
7	◇	207	28.0	동소문동 6가 52	柳原鶴
8	◇	209	23.0	◇	◇
9	◇	219	52.0	명문동 1가 32	李曉敬
10	◇	165	13.0	산림동 185	張景亮
11	◇	166	6.0	신당동 432-316	朴小燮
12	◇	164	19.0	산림동 164	李敬泰
13	◇	157	13.0	산림동 157·목정동 22	石有勝 李仁壽
14	◇	151	39.0	산림동 151	元方道
15	◇	232	21.0	◇ 232	李顯相
16	◇	204-2	34.8	충신동 18-105	李仁京
17	◇	213	37.0	운치로 4가 78	李壽重
18	◇	144	17.0	운치로 2가 57	김한동 주식회사
19	◇	143	24.0	◇	◇
20	◇	239-3	8.0	산림동 205-3	이기환
21	◇	190-37	1.4	산림동 190-20	金興淳
22	◇	190-38	0.6	산림동 190-26	李甲福
23	◇	190-39	3.6	◇ 190-23	趙명하
24	◇	190-40	4.9	◇ 190-26	陳聖秀 李甲福
25	◇	190-36	51.3	명문 1가 33-26	金斗健
26	◇	181-2	0.4	◇	◇
27	◇	172-1	22.3	산림동 174	李金河
28	◇	173-2	2.7	◇ 173	崔東分
29	◇	141-4	89.6	◇ 141-1	金道奎
30	◇	141-5	13.4	◇ 158	方景煥
31	◇	142-2	65.0	◇	◇
32	◇	233-2	1.4	◇ 235	嚴治錄

33	중구산림동	229-1	0.3	행촌동 158외2	李成斗	가동기 신당동 450-1 03 집 일택
34	〃	227	6.0	〃	〃	
35	〃	227-2	0.2	〃	〃	
36	〃	226-1	12.5	산림동 226	閔定植	
37	〃	225-1	7.0	〃 225	李勳敦	
38	〃	224-1	10.0	〃 174	洪필경	
39	〃	275-1	118.5	동선동 1가121·신당동349-201	金泳宇 金泰興	
40	〃	275-4	5.0	〃	〃	
41	〃	274-2	0.3	산림동 274-1	李乾鎭	
42	〃	152-1	22.5	흥천군흥천면신양리 42	엄주영	
43	〃	208	23.0	동초문동 66-52	柳原種	오경선 외 2人 오동하
44	〃	239	5.6	산림동 239-4	李敬淑	
45	율지로4가	10-1	12.0	율지로 4가 10-1	金鍾鎭	
46	〃	5-3	1.2	〃 5	金萬得	
47	〃	5-4	1.5	〃	〃	
48	〃	5-5	1.2	〃	〃	
49	〃	1-4	1.3	〃	〃	
50	〃	23-3	5.5	〃 23	오경선 외 2人	
51	〃	14	15.7 6.5	〃 14	오동하	
	계		1,055.9			

中 區

구분 순번	지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율지로4가	310-27	0.8 0.3	율지로 4가 310-7		李宗燮	
2	〃	310-28	0.3	〃 310-10		文金全	
3	〃	310-29	70.0	용두동 46		崔義哲	
4	〃	310-5	1.3	원효로 3가 236-1		張相映	

5	울지로4가	311-2	4.3 울지로 4가 311-2	宋直完
6	◇	311-3	5.0 계기동 91-19	李龍南
7	◇	311-4	3.0 울지로 3가 311	朴元斌
8	◇	311-1	1.9 ◇ 311-1	宋性吉
9	◇	309-1	15.0 방산동 134	金敏達
10	◇	310-8	4.0 울지로 3가 240	延經淑
11	인현동1가	1-15	20.0 충정로 3가 1-13·세우동 202	金明求
12	◇	1-16	17.0 인현동 1가 1-1	鄭大興
13	◇	1-17	0.2 필동 3가 97-6	鄭興順
14	◇	1-12	24.3 坡州修里竹院里 771	趙福男
15	◇	5-1	인현동 1가 1-11	吳永進
16	◇	15-3	13.0 ◇ 1-12	金明聖
17	◇	5-2	4.4 ◇ 5-1	李柱玉
18	◇	15-1	21.0 ◇ 15	鄭錫昌
19	◇	20-3	1.6 남대문로 2가 13	李西天
20	◇	4-14	34.3 인현동 1가 15-1	金敏福
21	◇	15-2	7.0 ◇ 20-1	黃大林
22	◇	1-13	0.7 ◇ 4	車成俊
23	◇	1-14	40.0 ◇ 15	金鳳俊
24	◇	4-2	20.7 파주군수리면죽원2리 771	趙福男
25	◇	4-3	인현 1가 1-11	鄭鳳春
26	◇	4-4	16.2 인현 1가 1-10	李昌烈
27	◇	4-16	1.2 ◇ 4	◇
28	인현2가	56-2	8.4 ◇	◇
29	◇	57-1	2.4 ◇	◇
30	◇	58-1	2.0 ◇	南圭典
31	◇	61-2	5.0 인현 2가 59	趙四龍
32	◇	62-2	11.0 ◇	◇
33	◇	128-37	6.1 ◇	◇
			7.0 ◇ 61	金柱玉
			15.1 ◇	◇
			42.0 ◇ 128-23	金澤寬

34	인현2가	128-33	4.1	◇	13	金敦日	
35	◇	128-16	5.7		◇	◇	
36	◇	128-38	1.0	◇	128-26	高鳴順	
37	◇	128-9	10.1		◇	◇	
38	◇	128-27	13.6		◇	◇	
39	◇	128-17	3.7	◇	128-27	洪花順	
40	◇	128-10	2.4		128-10	尹阿衡	
41	◇	128-36	29.0		◇	◇	
42	◇	128-11	9.0		◇	◇	
43	◇	125-2	1.4	◇	125	金甲順	
44	◇	124-3	7.4	인현 2가 124		李俊房	
45	◇	92-4	35.5	◇	92	全元哲	
46	◇	92-5	38.4	◇	91	任正彬	
47	◇	92-12	0.1	부산초량동 2가 37		安孝鎮	
48	◇	92-2	17.4	인현동 2가 91		李韓玉	
49	◇	91	21.0	◇		◇	
50	◇	89-2	8.4	◇		◇	
51	◇	57-2	5.0	◇	58-2	李鍾淑	
52	◇	58-3	11.0		◇	◇	
53	◇	63	39.0	◇	63	安順伊	
54	◇	116	22.0	◇	139	車承岩	車相順 外 9人
55	◇	106-1	7.0		◇	◇	
56	◇	68	16.0	윤치로 3가 251		大成堂인 수석회 사	
57	◇	67	21.0		◇	◇	
58	◇	67-1	6.0		◇	◇	
59	◇	66	13.0		◇	◇	
60	◇	64	14.0		◇	◇	
61	◇	76	18.0	신문로 2가 702-1		李淑來	
62	◇	81	8.0	인현 2가 81		이광준	

63	인현 2가	128-28	3.6	◇	128-26	高昌順
64	◇	90-2	21.0	◇	90-2	鄭賢淳
65	◇	68-1	2.8	울지로 3가 351		大城重인의주목회사
	계		882.4			

中 區

구분 순번	재산소재지		수용 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명	지 번		주 소	소 실 명	
1	인현동2가	135-51	21.2 11.6	울지로 4가 275	余曉傳	
2	◇	135-54	20.9	인현동 2가 135-13	安明玉	
3	◇	135-59	4.0	◇ 135	趙貞順	
4	◇	135-60	7.0	◇ 135-48	金昌經	
5	◇	135-61	12.1	◇ 125	崔大敏	
6	◇	135-57	53.1	◇ 135-41	閔璋植	
7	◇	135-39	11.0	◇ 37	徐亨植	
8	◇	135-21	6.1 10.1	◇ 135-21	李孝求	
9	◇	135-53	4.3	◇ 136	金仁烈	
10	◇	192-9	8.0	◇ 135-41	閔璋植	
11	◇	192-6	15.5	◇ 192	朴玉章 外 1人	
12	◇	192-11	32.0	◇ 192	李廷順	
13	◇	192-4	25.6	◇	金仁圭	
14	◇	192-13	13.3	◇ 192	崔희주	
15	◇	181-25	11.9	◇ 181-65 181-66	金永植 金永植	
16	◇	181-72	6.7	◇	◇	
17	◇	181-71	5.2	◇	◇	
18	◇	181-83	2.3	◇	◇	
19	◇	181-85	6.0	◇	◇	
20	◇	181-84	13.4	葛月洞 98-11	李俊採	

21	◇	181-81	0.3	인현 2가 181-43	李玉伊	
22	◇	181-82	6.4	인현 2가 181-60	金慶喜	
23	◇	190-2	4.6	종로 5가 285-3	林淳浩	
24	◇	181-79	20.4	인현동 2가 181-3	元道侯	
25	◇	183-27	7.9	◇ 183-4	李龍九	
26	◇	183-2	34.2	◇ 183	申相賢	
27	◇	183-5	8.5	◇ 183-5	仁範敎會	
28	◇	192-5	19.0	◇ 192-5	全植基	
29	◇	181-57	3.0	◇ 181-65 181-66	金永植 金泰賢	
30	충무로 4가	29-1	24.5	충무로 4가 27-1	韓東順	
31	◇	36-36	19.9	◇ 36-36	李熙健	假登記 石萬守
32	◇	36-72	0.6	을지로 4가 282	金千淵	
33	◇	112-2	22.0	태평로 2가 23	韓國火藥	
34	◇	113-2	3.7	◇	◇	
35	◇	116-16	2.1	충무로 4가 114	李基成	
36	◇	125-37	60.0	◇ 126	胡興製藥	
37	◇	126-4	0.8	◇	◇	
38	◇	127-12	13.0	◇ 127	朴弘奉 金允植 外 1人	
39	◇	127-17	1.1	◇	◇	
40	◇	127-4	6.1	◇	金允植	
41	◇	118-1	55.0	태평로 2가 23	韓國火藥	
42	◇	119	60.0	會賢洞 2街 72	張相泰	
43	◇	125-1	8.0	충무로 4가 125-2	金明學	劉昇得
44	◇	125-2	84.0	충무로 4가 125-2	金明學	가등기
45	◇	124-1	18.0	◇ 124	李圭志	
46	◇	124-4	20.0	◇	◇	
47	◇	124-2	18.0	◇	徐時分	
48	◇	124-3	20.0	◇	◇	
49	◇	127-1	3.0	◇ 127	曹完鎮	

50	중무도4가	111-2	14.0	◇	111	李春錄
51	◇	36-66	31.3	◇	36	吳致子
	계		891.4			
	총 계		2,829.7			

○서울특별시공고제34호

서울특별시 각종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실시 공고

1. 시험 실시 구분

시험면허종별	원서접수기간	학 시험실시일시	장 소	비 고
보통 제1종	3. 9~3. 15	3. 18~14 : 00	면허시험장 및 서울 시공무원교육원	1 가
보통 제2종	3. 31~4. 6	4. 8~14 : 00	◇	◇
보통 제1종	4. 14~4. 20	4. 22~14 : 00	◇	2 가
보통 제2종	4. 21~4. 27	4. 29~14 : 00	◇	◇
소형및특수	4. 28~5. 4	5. 6~14 : 00	◇	◇

가.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자는 학과시험장에서 알림

나. 학과시험 합격자의 기능시험일자는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지
정 받은일시요.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1) 교통관계법령 (2) 구조 및 취급방법

나. 기능시험

- (1) 저각반응점사 (2) 코스 및 장애물

3.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57호(면허시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나. 보통 제2종 및 소형특수면허 응시자는 1949년도 출생자로서 전과
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 보통 제1종 응시자는 1942년도 이전에 출생한자라도 출생일이 만 20

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하고 보통 제2종 면허를 받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매 (이런 신체검사란에 명동소계 국립경찰병원의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의 초본일부

다.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라. 사진 2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마. 보통 제1종면허 응시자는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증명서 1부 (시. 도 지사 발행)

바. 수수료 3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응산구 한남동 소재 운전면허 시험장

6. 기타

가. 필기시험도구는 청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십시오

나. 이후 각종 면허시험은 계속 실시하니 상세한 사항은 경찰국 교통과 또는 각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35호

1964년 11월 27일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404호로써 관지처분한바있는 제2종 양토지구회정리 남대문(양도동) 지구중 관지처분 일부에 대하여 번지환지변경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에대한 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및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합니다

서기 1967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141호

警察車輛統制管理規程

1967. 2. 10

第 1 條(目的) 이 規程은 警察車輛의 效率的인 管理運營과 安全通行을 圖謀하여 그 任務遂行을 圓滑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用途) 警察車輛은 다음의 用途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 ①國內外 要人警護와 警備
- ②犯人搜查
- ③交通團束 및 移動隊巡察
- ④人命救護
- ⑤通信架設 및 補修
- ⑥被害者の 護送
- ⑦屍體의 運搬 및 解剖
- ⑧事故車輛의 救助作業
- ⑨兵力 및 物資輸送
- ⑩警察官 및 消防官의 教育
- ⑪其他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警察業務

第 3 條(主務課 및 管理官) ①警察車輛의 綜合的 需給計劃業務는 警察局長이 總轄하고 그 統制官이 되며 警備通信課(以下「主務課」라 한다)에서 分掌하고 當該課長은 車輛管理官(以下「管理官」이라 한다)이 된다

②管理官은 다음 事務를 管掌한다

- 가) 車輛의 綜合需給計劃 樹立 및 施行
- 나) 車輛의 統括引受 및 配定
- 다) 分任管理課의 再配定에 對한 同意
- 라) 車輛에 關한 綜合的 運營監督 및 監査
- 마) 其他 車輛維持管에 對한 事項

第 4 條(分任管理課 및 分任管理官) ①車輛의 適正한 管理를 爲하에 車輛所 屬別 分任管理課(以下 管理課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定하고 當該課長은 分任車輛管理官(以下 管理官이라 한다)이 된다(別紙 1號 參照)

②分任管理官은 다음 事務를 管掌한다

1. 車輛引受 및 運用官 使用官別로 再配定
2. 車輛의 管理監督 및 監査

第 5 條(運用官 및 使用官) 車輛을 再配定 받아 運用하는 分任管理課의 長은 그 管理의 徹底를 期하기 爲하에 課庶務係長을 運用官으로 또 車輛使用部署別係長을 使用官으로 指定 運用監督을 하게하여야 한다

第 6 條(運轉員의 資格) 警察車輛의 運轉員은 自動車運轉免許를 가진 者로서 配置하여야 한다

第 7 條(運轉員의 責任) ①警察車輛의 運轉員은 配付받은 車輛에 對하여 整備를 徹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運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前項의 整備責任을 怠慢히 하여 車輛을 毀損하였거나 事故를 發生시켰을 때에는 懲戒에 廻附한다

第 8 條(整備區分) 警察車輛의 整備는 다음의 各號와 같이 第1段階 乃至 第5段階로 區分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①第1段階整備(A整備) 運轉員이 實施하는 日日整備로서 別紙2號 書式에 依하여 行한다

②第2段階整備(B整備) 運轉員이 14日마다 實施하는 整備로서 別紙3號 書式에 依하여 行한다

③第3段階整備(C整備) 熟達한 整備工이 每月 1回 實施하는 月間整備로서 別紙4號 書式에 依하여 行한다

④第4段階整備(D整備) 熟達한 整備工이 6個月마다 實施하는 整備로서 別紙4號 書式에 依하여 行한다 (6個月 以內라 한지라도 16000K를 運行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第4단整備를 行한다)

⑤第5段階整備(E整備) 車輛의 再生을 爲한 整備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第5段階整備를 하여야 한다

가. 후면에 破損

나. 車體(보체)의 完全한 破損 및 腐蝕

다. 트랜스 및 종의 使用不能

라. 前後 車후의 完全한 破損

가. 引擎의 壓力減少

마. 事故로 因하여 大破된 車輛

第9條(點檢 및 敎養) 警察車輛 主務課(係)長 및 警察署長은 每週土曜日에 警察車輛의 整備點檢을 行하고 月 1回以上 運轉員의 敎養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10條(車輛의 駐車保管) 車輛의 駐車保管은 다음 區分에 依한다

① 勤務時間(公務員服務規程 第8條)內는 各所部局署 및 派遣隊

② 公休日 및 勤務時間(公務員服務規程 第8條)外는 다음과 같이 駐車保管 하고 「키」는 當區에 保管한다

가. 本局 및 各署駐車場

나. 移動隊駐車場

다. 巡察隊駐車場(巡察隊 騎馬隊 裝備隊 國會警備隊所屬車)

③ 局課署 校長 乘用車輛은 使用者의 宿所 또는 管轄使用所에 保管하고 自 動車「키」는 使用者가 保管한다

第11條(運行簡次) ① 警察車輛을 運行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5號書式의 運行 許可傳票에 勤務時間(公務員服務規程 第8條)內는 分任管理課長 公休日 및 勤務時間外는 當直課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規程에 依하여 許可된 때에는 車輛의 運行官 또는 使用官이 運行許可傳票(別紙5號 書式)의 下端을 切斷하여 使用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③ 使用者는 運行許可傳票를 指定한 車輛의 運轉員에게 交付하고 使用後運行日誌에 用務 目的地 經由地 運行時間 運行區間을 기록하고 確認欄에 捺印하여야 한다

④ 公休日 및 勤務時間外는 當直課長이 分任管理課長 宿直課長이 運行官의 職務를 代行한다

인 일 정 비 검 사 표

자 196 년 월 일
지 196 년 월 일

소 속	차 번					운전원 경 인											
구분	요일	月	火	水	木	金	土	日	구분	요일	月	火	水	木	金	土	日
運轉前									연경식대								
차재와손									프란스밋송								
누출구검반									잠 습								
연료오일줄									적재화물								
엔진 온도																	
연장장구									運轉後								
박 계 기									부렛기 및								
다이아람력									안전장치								
안전장치									벨트및차비								
運轉中									연료오일줄								
제 계 기									하이 드릴								
부렛 기									반 사 경								
크 밧 치									밧 대 니								
환향장치									다이아람력								
									밧 압 령								
									모노외조입								
									경 소								
비																	
고																	
운전자 본인은 노조장비 및 점검을 실시하였음																	

예 방 정 비 검 사 표

소속				검 차 판 정 명	④			
차종	본			차량번호판 호	호	기판번호		
운전 연료 물 부동액 제제기 류출구 전반 및 기타 일체검사								
결함이 있으면 해당란에 C표 할것								
순위	검 사			비 용	조정 수리	가	정비비용	
1	연료, 오일, 물 (류출구 전반)							
2	나이야 채드							
3	부메키 소화기							
4	반사경, 램프라이트, 헤드라이트							
5	온도메타, 오일메타, 라미타							
6	제기, 유일메타, 스피드메타							
7	제반, 작용, 작품, 걸							
8	스프링, 싹클							
9	속압소바, 뱅크							
10	주유 청소 밧메리							
11	벨트 체인 전기 배선							
12	액슬 및 트랜스 화케스							
13	도락구 링구 점접 연결							
14	제비메타 트랜스 밧송							
15	라지에다 카부레다 기구오일							
작업개시	서기 196	년	신	일	작			업
작업완료	서기 196	년	월	일	성명			

정 비 검 사 표

소속	단체명	과 일 수	년
차종	차량번호 관 호	기관번호	월 일
운 번 호	집 사 및 시 운 전	가	조 경 수 비 등
1	제기판스킷치 및 제치운도 연료 공기압력 소일압력 점화스킷치 비스코메타 임메타 몬트메나 스피드메타 (기타일체조정)		
2	혼이나 및 윈도구리나		
3	연청공회전 가속동력 감속 조정속도		
4	스티어링 유닛(물이는 것) 방화진동 및 호이부		
5	브레이크유닛 감속 다칠스립		
6	제방배터 및 스킷치기전 감속속도		
7	트랜스밋팅 및 트랜스화케스		
8	장유 부착물 운전실보터 및 호일부 동력전달장치		
9	라이프 벨트브러 주형 스톱 및 관자동		
10	위다 부로페라사후도 호인트메아면		
11	방향기사후도 케블 폭도 부나점		
12	부로페라사후도 하부동		
13	운도부멧트압 역수 레스 및 용트스킷치동		
14	유출냉장소일 연료유 압전트렌스 및 용트스킷치트렌스 및 기타 연정오일(모든 비스코메타 점화유)		
15	주유 규정된 주유법에 의한		
16	위다롭스 후와 후와벨트 부레		
17	발프기능 간다 카마자스킷		
18	스파크 프러크 원소 및 조경 코아포인드 사후도 연동 부론 코일 및 버릴		
19	마니콜트		
20	카부메다 포그 스윙홀		
21	대기과일부 및 마후반		
22	리크가이드 약카사후도 식별단 칼호스		
23	유출실 및 해설보터도와 동동장치 가나스틀트 및 호대		
24	배입카빈 및 무원장지 서드장치 드리인전 및 일		
24	우인지 광격장치 기술집사 6월원 또는 6,000마일		

차량운행허가전표

No. _____

1. 운행일시 196 분부터
196 분까지

지원	계장	과장	결
			제

2. 운행구간 자 지
3. 지정차량 호차
4. 탑승자격위 성 명

5. 용 건
6. 운 전 원

자	마일
지	마일

상기와 같이 운행허가함

196 경비과장

운행허가전표

No. _____

1. 운행일시 196 분부터
196 분까지

2. 운행구간 자 지
3. 지정차량 호차
4. 탑승자격위 성 명

5. 용 건
6. 운 전 원

자	마일
지	마일

상기와 같이 운행할것

(내)

경비과장

車輛事故에 對한 指揮監督責任限界

번 호	違 反 事 項	1 次 責 任			2 次 責 任			3 次 責 任		
		運轉員 또는 當事者			使用者 使用官 當直係長			分任管理官 및 運用官 當直係長		
		1 回	2 回	3 回	1 回	2 回	3 回	1 回	2 回	3 回
1	無斷運行	始末書	轉 配	懲戒回附	警 告	始末書				警 告
2	無免許運轉	懲戒回附			始末書	懲戒回附			警 告	始末書
3	飲酒運轉	始末書	懲戒回附		同 上	同 上				警 告
4	不當貸與	懲戒回附			懲戒回附			懲戒回附		
5	營利行爲	同 上			始末書	懲戒回附		警 告		
6	盜 難	辨 價 懲戒回附			辨 價 懲戒回附			辨 價		
7	整備不足으로 因한 事故	同 上			辨 價 始末書 使用官 (3段階 整備限)	同 上				
8	交通事故(車輛 器物 損壞)	同 上			辨 價 始末書	辨 價 懲戒回附				
9	交通事故(傷害 10日以內)	同 上			同 上	同 上				
10	交通事故(傷害 10日以上)	同 上			同 上	同 上				
11	交通事故(死亡)	辨 價 辭表受理			同 上	同 上				

別紙 6號

◎서울특별시예규제142호

서기 196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진개처리업허가 사무취급요령

오물청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오물청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한 다량 및 특수오물 배출자로서 법제14조 및 규칙제14조에 의한 진개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다음요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위임사무를 취급한다(이 요령중 시행요령은 령이라하고 보사부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1. 자 격

가. 서울특별시 주소를 가진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규칙 제14조에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춘자

나.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자로서 가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진개처리업이 소요되는 운영자본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한 다량오물 배출자 또는 법제7조에 규정한 특수오물 배출자로 부터 오물처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

마. 최소생계의 위생을 유지케할수있는 자

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비한자
다만 본항에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 및 수집처리기준

가. 시설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나. 진개처리업 장비는 변지 장비기준표에 의한다

다. 수집은 령제2조 제1항에 의한다

3. 허가 신청 구비서류

가. 진개처리업허가 신청서

나. 규칙 제10조에 규정한 구비서류

다. 본요령1항의 과적관측을 증거할수있는 서류

라. 신청자의 납세완납 필증

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5. 허가조건

규칙 제14조에 의한 진개처리업은 다음 조건으로 허가한다

가. 시설

사무소 차고 진개의 수직운반 및 처리를 할수있는 운반용 기계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관리

1) 종사원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청소작업을 철저히 할것이며 배민친절에
소홀함이 없게끔 교양강화를 실시할 것

2) 작업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완전수거도록 할것이며 일부사적에는 대행
인이 직접 사역지휘를 할 것

3) 장비

(가) 진개처리업 장비는 화물차와 수하차를 확보할 것

(나) 운반차의 운반용 용기에는 진개가 비산되지 않도록 복개장치를
할 것

(다) 모든 장비는 깨끗이 세척을 하여 항상정결을 유지할 것

(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색 및 표식을 하여야하며 시장의 검사
를 받을 것

4) 수집 및 처리

(가) 수집 및 처리장소는 환경위생상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하고 2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나) 진개의 매립처리를 할 때에는 1층의 높이는 3m 이내로 하되
그 표면은 흙 기타 적당한 것으로 60cm 이상 덮을 것

(다) 금지사항

- 1) 시장과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저서명령은 절대순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복종할 수 없다
- 2) 작업에 제하여 관계법을 어길수 없다
- 3) 본허가대상 이외의 대상은 수거할 수 없다
- 4) 수거표는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허가된 처분장이외의 지역에 오물을투기 또는 처분할 수 없다
- 6) 수하차로 종말처분장까지는 운반할 수 없으며 수하차로 시내를 폐회하지 못한다 단 자가수거는 예외로 한다

(라) 보 고

- 1) 시장의 지시에따라 장비종사원, 처분장, 수거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할 것

(마) 허가기일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 허가취소

본허가 조건을 준수지 않을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처리업자의 재산상 손해에대하여 당시에서 책임을 지기 않는다

(사) 벌 칙

처리업자가 본허가 기간중 작업수행상 범한죄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업자 합입하여도 무방함

6. 위입의 한계 및 처리

법제6조 및 제11조와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다량 및 특수오물 배출자로서 자가수거를 위입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1) 관공서 국영기업체 학교 시장은 신청에 의하여 자가수거를 위입하고 여타의 다량 및 특수오물 배출자는 본요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서 자가수거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위입하여 처리케 한다

2) 무허가 시장은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위임처리케 하고 시장개설허가 권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개설허가권자의 자가수거 위임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전기 가항의 위임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구비한자에 대하여 위임한다

- 1) 오물자가수거 신청서
- 2) 오물의 종류 및 수량
- 3) 운반기구의 종류 및 수량
- 4) 오물의 처분장 및 처분방법
-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7. 허가사무 추진계획과 감독 및 보고

가. 수거할 대상자 조사

각구에서는 허가에 앞서 수거대상자를 조사결정하고 배출량을 확정할 것이며 지역 분포를 검토할 것

나. 수거대상자 및 배출량을 확정하여 별지 1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할 것

다. 사전 조사 확정된 배출량월간 1,000톤을 기준하되 이에 미달되는 구는 1인에 한하여 허가할 것

라. 표시제정

구에서 담당하는 청소와 허가업자가 처리하는 청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전제 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를 제정 실시 한다

1) 장 비

업자가 지정한 마크를 기구의 전후 양쪽에다 표시하고 색으로 도색한다

2) 청소부

제모 완장 작업복상의를 착용케하되 제모에는 마크를 완장에는 구단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하며 처리업자의 신분증을 소지케 한

다

3) 배출처 표시

다량 및 특수오염배출자 문건의 보기쉬운곳에 다 다량과같은 표지를 만들어서 첨부하여야 한다 예시 다량오물 수거거구

마. 보고 구청장은 처리업자로부터 매월말현재의 장비현황(별표 3호서식)과 수거실적(별표 4호서식) 및 종업원명단(별표 2호서식)을 장려하여 익월 5일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 독

1) 구청장은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감독일지를 적어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처리업운영에 소요되는 지출지산서를 반듯이 검토한 것이며 사역인부임 지분증명서를 제시토록 한다

3) 수거수수료는 고지서 및 영수증을 발부하고 징수토록 한다

4) 장비는 처리업자가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작업에 착수케하고 허가후 3개월마다 장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입에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

법제15조 및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위입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일주일간의 유예를 주고 오물처리업자에게 통지하여 별당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전계처리업 허가사무 추진계획

본허가사무는 별표추진계획표에 의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전계처분장을 설치할때에는 소할구청장이 지체없이 공고하고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계처리업 장비기준

1. 목적 본장비보유기준은 전계를 능률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시민의 보건위생상과 도시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2) 예 규

2. 기준 작업상의 능률도 보건위생 및 도시기화를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 사항을 시달한다

가. 전개처리업은 반듯이 화물차와 수하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하차로 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할수없으며 시내를 배회하는것을 금한다

다. 월간 전개매출량 1,000톤 단위를 기준하되 미달되는 구는 이에 준한다

라. 기준표

구 분 매출량	장 비		종업원	비 고
	화물차	수하차		
1,000(월간)	1대	10대	15인	
2,000 (톤)	2	20	30	
3,000	3	30	45	
4,000	4	40	60	
5,000	5	50	75	
6,000	6	60	90	
7,000	7	70	105	
8,000	8	80	120	
9,000	9	90	135	
10,000	10	100	150	

마.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본표의 수하차 및 종업원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

별지

전개처리업 허가사무 추진 계획표

항 목	별	실시및보고월일	보고구분	시	식	별
1. 수거대상자 조사실시	분기초순	순	보		1	

2. 수거대상자 대상작성	분기중순	◇	1
3. 수거대상자보고	분기말	◇	1호시식 5항의 집계 표에 의한
4. 업자선정	업자선정을 할 때마다		2
5. 업자선정결과 보고	첫번째 집계하는 가일로부터 2주 이내		
6. 장비검사 실시	히가일로부터 2 주이내	원 보	3
7. 종업원 명단보고	◇		4
8. 장비현황보고	허가한 익월로 부터	◇	6
9. 전계수거 실적보고	◇		8
10. 전계처분장 현황보고	◇		1호시식 1항의 집계 표에 의한
11. 수거대상자 이동보고	허가한 익월부터	◇	5
12. 작업현황보고	◇		7
13. 업태별전계수거집계표	◇		

서식 1

다량 특수 오물배출자 대장

번 호	업태별	상 호	배 출 자			1인어울 비 고
			소재지	동 반	사 관 명	

대장 작성상 주의사항

1. 특수오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비교전 상명에 특수으로 표시한다
2. 본대장은 업태별 동별순으로 작성한다
3. 업태는 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 요식업, 배화점, 시장, 기타로 나
별한다
4. 번호는 구단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5. 배출자의 이동은 그 사유와 년월일을 비교란에 기재경리한다
6. 배출량은 카트그림으로 표시한다

7. 대장단위에는 다음집기표에 의하여 대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동시마다 정리한다.

서식 2

업 가 선 정 결 과 보 고

허 가 자			허가 일자	업무 구역	배출량 (톤)	수거대 상개소	장 비		비 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화물차	수하차	

서식 3

종 업 원 명 단 보 고

번호	처리업자	종 업 원					비 고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신도	

서식 4

장 비 현 황 보 고

구월말현재

구분 종별	총 대 수	내 역		차 량 번 호	비 고
		정대수	가동대수		
화물차					
수하차					
리야카					
우마차					
기 타					
계					

1. 본장비 현황은 허가발내역을 첨부한 구담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할것

서식 5

과업현황보고

구월말현재

구분 구별	최 리 작 업 실 지	작업실지		차량가동		수 거 소 계	종업원	비고
		배출량	수거량	가동 대수	수거 회수			

서식 6

진개수거실적

구분 구별	입 재 명	진개내역		비고
		연반개	휴지압제	

서식 7

업태별진개수거정제표

구월말현재

구분 동별	(1) 관공서			(2) 학교·회사·공장	(3) 요식업·백화점·시장·기타	계	
	개소	배출량	수거량	(1)과 동일함	(2)과 동일함	배출량	수거량
일제							
월제							

서식 8

전 기 처 분 장 령 황 보 고

소 재 지	소유자	거 리	평 수	매립진도	처리업자	비 고

◎서울특별시예규제143호

서기 196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糧穀加工業許可事務取扱要領

1. (目的) 糧穀加工業(以下 加工業이라 함)의 許可 및 內容의 變更承認事務의 取扱節次를 統一 簡素化하기 爲하여 이 要領을 制定한다
2. (工場의 區分) 糧穀加工工場(以下 工場이라 함)은 取扱上 그 規模 및 施設能力에 따라 動力 30馬力 以上の 該當 機械設備工場을 大規模工場으로 하고 그 未滿의 工場을 小規模工場으로 區分한다
3. (大規模工場의 施設基準) 大規模工場의 加工區分別 施設基準은 아래와 같다

가. 米穀部

原 動 機 : 30馬力以上

石板裝置 : 石板風具 2臺以上 從選萬石 1臺 以上

製 玄 機 : 2臺以上(一連式에 限함)

精 米 機 : 特號 또는 一號 6臺 以上

鍊磨裝置: 모리式精米機 或은 坐等式

鍊磨機: 1臺以上 6角제 12尺 以上の 1臺以上

其他 附屬施設 一切

나. 麥穀部

原動機: 30馬力以上(他施設의 原動力과 兼用할 수 있음)

石板裝置: 石板風具 2臺以上

精麥機: 特號 또는 1號 4臺以上

鍊磨裝置: 12尺 以上の 斗들제 또는 六角제 2臺以上

其他 附屬施設 一切

다. 押麥部

보이러裝置: 直徑 4尺 길이 8尺 60톤드 以上

通熱裝置: 스마이다 50尺以上

押磨裝置: 直徑 12吋 길이 24吋 以上

冷却裝置: 1.800/m 회전 以上の 空速受 후앙스, 吹口 6吋以上

精選裝置: 精米機 2台以上

其他 附屬施設 一切

라. 製粉部

精選裝置: 水選, 脫水, 其他原料 精選機臺等

石板裝置: 石板風具 2臺以上

分碎裝置: 부레-기 스톱스고루 容量 200L/L 以上

세 裝置: 사후다 또는 리루

其他 附屬施設 一切

(但 各部 共히 改良된 高性能機械을 設置한 施設에는 이에 相應한 施設은 하여야 한다)

4. (小規模工場의 施設基準) 小規模工場의 機械設備의 基準은 當該 加工糧穀의 우수한 製品을 生産할 수 있는 規模와 性能이 있어야 하며 許可施設 最低基準을 아래와 같이 定한다

가. 工場構造

建坪	建物構造	内部構造	換氣採光	動力	1日(10時間)生産能力	其 他
10坪	木造土壁 草 葺	土 壁 콘크리트 바닥	6坪門4個 電燈 2個	5馬力	白米基準 800kg	必要한 施設

나. 機械施設

(1) 米穀部

製 玄 機	精 米 機	石 臼 裝 置	精 選 風 具	손 들 세	其 他
1臺	1臺	1臺	1臺	1臺	附屬機具

(2) 麥穀部: 精麥機 1臺 其他附屬機具

(3) 製粉部: 中搗式製粉 機 1臺 精選裝置 체 장치
其他 附屬機具

(4) 押麥部

고아라裝置	押 篩 機	冷 却 裝 置	過 熱 裝 置	精 麥 機	其 他
直徑 4尺 길이 8尺 60 폰트	直徑 12吋 길이 24吋	1,000m 회전 排氣吸口 5吋	스파이더 50尺	1臺	附屬機具

5. (工場設置場所) 工場의 位置場所는 工場稼動으로 因하여 工場周圍 人家에 振動과 騒音 및 塵芥의 飛散等으로 加害되지 않아야 하며 住宅地에 工場을 設置 또는 増設한 경우에는 工場周圍 7家口主 以上の 工場設置同意書를 얻어야 한다

6. (設置許可申請) 工場을 位置코자 하는 者는 別表書式一號 工場設置許可申請書를 工場設置同意書가 事業計劃書 釜地證明 및 施設配置圖를 添付하여 市長 또는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小規模工場의 設置申請書는 管轄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區廳長은 이 要領의 4, 5 및 16項의 違背與否를 調査確認後 處理하여야 한다

7. (設置承認) 市長 또는 區廳長은 設置申請內容을 檢討하여 適當하다고 認定된 別表書式2號에 依한 設置承認書를 發給한다

8. (設置期間) 前項에 依한 設置承認을 받은 者가 2個月以內에 그施設을 竣工하지 않으면 이를 無効로 하고 特別한 事情이 있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事前延期承認하였을 때는 이를 例外로 한다 다만 承認書에는 設置期間을 明記하여야 한다
9. (竣工報告) 8項에 依據 承認된 工場의 그 施設이 竣工完了되었을 境遇에는 工場竣工報告書를(工場 및 施設證明書 添付) 市長 또는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小規模工場의 竣工報告書는 管轄 區廳長에게 提出하고 區廳長은 工場施設狀況을 調査하여 別表 舊式3號에 依한 工場施設調査를 作成하여야 한다 (竣工報告書를 添付)
10. (許可證交付) 市長 또는 區廳長은 承認된 工場施設이 完備되면 (大規模工場은 市長이 그 施設을 確認한) 舊式3號에 依한 工場施設調査를 作成 設置하고 別表 舊式4號에 依한 許可證을 發給하지 區廳長은 市長에게 (所定 樣式) 即時 報告하여야 한다
11. (工場の増設改設移設 및 賃借 譲渡) 既許可된 工場의 増設改設移設의 承認 및 許可證次는 新規工場 許可證次에 準하고 賃借 및 譲渡로 因하여 加工業의 名稱을 變更 許可받고자 하는 者는 舊式1號의 申請書에 賃借契約書 工場讓渡證 및 印鑑證明書를 添付하여 市長 또는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小規模工場의 申請書는 區廳長에게 提出하고 區廳長은 9項의 要領에 依據 工場施設調査를 接受 處理하고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3. (施設의 改良指示) 市長 또는 區廳長은 必要에 따라 既許可한 工場의 施設에 對하여 改設을 命할 수 있으며 許可된 施設을 無異變造 또는 撤去하였을 境遇에는 이를 補完指示하거나 別表 舊式5號에 依據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4. (政府權限 加工工場의 指定) 市長은 既許可된 大規模工場中에서 農林部長官이 指定 定數 範圍內에서 別表舊式 第6號에 依한 政府權限 加工工場을 指定選定하고 要領에 따라 이를 更新할 수 있다 但 現存工場 및 施設定數外는 不可한

15. (廢業申告) 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자가 그 業을 廢止하고자 할 境遇에
는 그 業을 廢止한 날부터 7日以內에 廢止事由와 그 日時를 記載하여 市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小規模工場의 廢業申告는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6. (工場의 定數) 小規模 糧穀加工工場 定數는 別表와 같다 但 이 取扱要領
制定前에 許可된 工場은 이 要領에 依據 許可된 것으로 看做한다
17. (通牒의 消滅) 市산시 1131.65~14344(64년 10월 23일) 및 市산양 1133
65~2246(64년 4월 9일)에 의한 糧穀加工業許可處分 通牒中 本要領에 抵
觸되는 部分은 本要領施行日부터 自動적으로 消滅한다
18. (施行日) 本要領은 1966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舊式 1號

양곡가공 공장()승인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년월일	19 . . .	주소	(전화)												
2. 공장	명칭				가공종												
	소재				대지	평											
3. 승인가	년월일				승인허가	번호											
4. 공장시설	가	전	물	원	동	력	기	계	시	선	부	대	시	설	기	타	
		중	별	병	수	중	별	병	수	중	별	병	수	중	별	병	수
		①															
②																	
5. 시공	공사착공일	19 . . .	입차	기간	19 . . .	간											
위와 같이 양곡가공공장()을 신청하오니 허가·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인 印															
6. 조사 의견																	
위와 같이 승인·허가 신청사항을 조사구신 합니다																	
19 . . .																	
조사자																	
서울특별시청 귀하																	

- ① ()란은 신청구분에 따라 양도 승인 또는 설치 및 명의변경 허가등으로 기업한
② 4항의 ①은 신규로설치할 시설을 기입하고 ②은 증합선등 ①항에 대한 변동사항
을 기입

舊式 2號

양곡가공공장()승인서

양곡가공공장 규모구분

승인번호제 호

공장소재지

상 호

대표자성명

승인사항

승인자유 및 내역

년 월 일자 출원에 대하여 안곡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승인함

196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書式 3號

糧穀加工工場施設調査

1. 工場	名稱		所在地	坪	加工果實	
	所在			承應年月日	19	：
2. 代表者	姓名		生年月日	19	：	：
	住所			(전화)	統	班
3. 許可申請事由						
4. 工場規模						
産 物		原 動 力			生産能力 (1日 10時間)	
種 別	坪 數	棟 數	種 別	臺 數	馬 力	數 量
						kg
5. 機械施設						
基 本 施 設			附 帶 施 設		其 他	
機 種	規 格	臺 數	機 種	規 格	臺 數	
6. 調査者意見						

※ 6項은 工場의 沿革 및 事業計劃等を 調査記載하고 特殊設備을 記入 (16切紙)
할것 工場의 賃借 譲渡時는 二 事由 및 期間을 明確히 記入할 것

위와 같이 공간시설조서를 작성 보고합니다

196 년 월 일

조사자

서울특별시장 귀하

式 4號

리 가 중

양곡가품공장규모구분

국가번호제 호

공장소재지

상 호

대표자성명

허가업종

허가주요시설

종	별	형식	규격	대수	종	별	형식	규격	대수

196 년 월 일자 양곡가공업

허가출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6조의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함

196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舊式 5號

양곡가공업()처분통지서

양곡가공업장 규모구분

처분번호제 호

공장소재지

상 호

대표자성명

처분사항

사 유

양곡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196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舊式 6號

서산시제 호	정부관리 양곡가공업장 지정지명서
一、공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동가 번지 호	
一、공장명칭	
一、대표자명	
一、지정목적	
一、지정기간	
우 서울특별시 양곡가공 공장으로 지정함	
서기 一九六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別表

區 糧穀加工工場(小規模)定數

區 區 別	碾磨工場	製粉工場	計	備 考
鍾路區廳		25	25	
中 區 廳	16	13	29	
東大門區廳	10	69	79	
城東區廳	60	16	76	
城北區廳	16	49	65	
西大門區廳	8	43	51	
麻浦區廳	2	30	32	
龍山區廳	13	19	32	
永登浦區廳	60	13	73	
合 計	185	277	462	

◎ 서울특별시 예규 제144호

서기 1967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회 옥

예산집행 합의 절차

1. 196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967년 3월 1일 이후에 기안하는 모든 예산집행 서류에는 반드시 서울 (예산집행) 합의 (집)기안문에 첨부하여 주관 과장 국장의 결재를 득한후에 예산과장 합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별지 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매일 하에 강화하여 기입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액은 해당목의 총액을 기입한 것

다. 기집행액은 배정액과 추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표시한 것

라. 잔액은 예산잔액을 표시한 것

- 라. 기본운영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의 해당 페이지를 기입할 것
- 바. 기본운영계획을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기본운영계획수정 년 월 일을 기입 할
- 사. 기본운영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기본운영계획수정 「요」란에 「○」표를 표시하고 기본운영계획 수정을 불필요로 할경우는 「불요」란에 「○」표를 할것
- 아. 재원란에는 세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액과 징수액 국고보조사업등 특정재원유무 그 수명여부 기타 재원관계를 기입할 것
- 자. 비교난은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입할 것
- 차. 일자는 예산과에서 추산시 기입한다